

韓國戰爭被害統計集

國防軍史研究所

發 刊 辭

8·15 광복을 맞은 우리 민족은 바야흐로 통일된 민족국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일제가 남긴 잔재를 씻어내는 한편 민족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매진(邁進)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민족보다 이념에 눈이 먼 북한 공산집단의 남침 도발(挑發)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이 일어남으로써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일단 남북한 간의 무력행위는 종식되었지만, 동족상잔의 참화는 오늘날까지도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아 민족사의 발전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대로입니다.

한국전쟁의 피해는 결코 물질적 손실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인적(人的)·물적(物的) 피해만 하여도 실로 막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각종 피해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기관이나 단체별로 정리한 것이 있으나 부정확한 내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행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통계수치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수정·보완작업이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당 연구소에서는 한국전쟁 발발로부터 휴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우리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현황에 대한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한 〈韓國戰爭被害統計集〉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여 제1장에 수록하였고, 한국의 피해를 ‘국군’과 ‘경찰 및 민간인’으로 대별하여 각기 제2장과 제3장에 정리하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16개 유엔참전국들의 피해는 제4장에 실어 두었습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발행된 관계기관의 문헌을 수집·검토하고 정리한 후 2차에 걸친 해당기관의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세부내용의 정리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통계자료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또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통계인 만큼 본 통계집이 일반인들에게 한국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또 한국전쟁을 연구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며, 이 책이 나오기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996년 12월 일

國防軍史研究所 所長 嚴 燮 駟

凡 例

1. 이 책은 한국전쟁을 개관한 “한국전쟁 요약”과 전쟁기간에 발생한 각종 인적·물적 피해 통계자료를 국군, 경찰 및 민간인, 유엔참전국순으로 수록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자료 중, 원고작성을 완료할 때까지 수집 불가능한 것, 미수집된 것, 관계기관에서 검토 미완료된 것 등은 그 성격에 따라 최근에 발행된 기존자료로써 정리하였다.
3. 자료는 주로 통계청, 경찰청, 각군 본부의 공식통계자료를 수록하였다.
4. 본 통계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출처기관을 통계표에 명기하였다.
5. 이 책의 장, 절, 항, 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가, 나, 다, ……
소목 : (1), (2), (3), ……
세목 : (가), (나), (다), ……
6.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문장은 한글 위주로 평이하게 썼으며, 고유명사나 혼동하기 쉬운 용어 등은 원어를 () 안에 삽입하였다.
7. 현재의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편의상 각각 중공(군)과 소

련(군)으로 표기하였다.

8. 연대(年代)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하였다.

9. 통계표 중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0 : 단위 미만

- : 해당 숫자 없음(0 포함)

… : 해당 숫자 미상

10. 통계현황에는 망라기간이 1953년 12월 31일까지 포함된 것이 있다.

11. 공산국가의 피해와 관계자료목록을 책 끝에 실었다.

目 次

第 1 章 韓國戰爭 要約	11
第 2 章 國軍의 被害	31
第 1 節 概 說	31
第 2 節 陸 軍	36
1. 概 要	36
2. 人的 被害	37
3. 物的 被害	48
第 3 節 海 軍(海兵 包含)	55
1. 概 要	55
2. 人的 被害	57
3. 物的 被害	58
第 4 節 空 軍	60
1. 概 要	60
2. 人的 被害	61
3. 物的 被害	63

第3章 警察 및 民間人の 被害	65
第1節 警 察	65
1. 概 要	65
2. 人的 被害	67
3. 物的 被害	73
第2節 民 間 人	80
1. 概 要	80
2. 人的 被害	82
3. 物的 被害	88
第4章 유엔 參戰國의 被害	107
第1節 概 說	107
第2節 國家別 被害	112
1. 오스트레일리아	112
2. 벨기에/룩셈부르크	114
3. 캐 나 다	115
4. 콜롬비아	117
5. 에티오피아	118
6. 프 랑 스	120
7. 그 리 스	121
8. 네덜란드	123

9. 뉴질랜드	124
10. 필 리 핀	125
11. 남아프리카공화국	127
12. 타 이	128
13. 터 키	129
14. 영 국	131
15. 미 국	135

附 錄

1. 共產國家의 被害	143
2. 關係資料目錄	147



韓半島를 南과 北으로 分斷하고 있는
‘北緯 38度線’ 岫말

第 1 章 韓國戰爭 要約

북한(北韓)의 남침 전쟁계획은 1948년 9월 김일성(金日成) 정권 수립과 때를 같이하여 김일성·스탈린·모택동 3자(者)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었다. 이는 당초 군정(軍政)을 실시하면서 북한을 공산기지화하고 이를 발판으로 남한(南韓)의 민주봉기와 폭동 및 반란을 유발하여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한 소련이, 이러한 폭력적 방법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행착오를 통하여 깨닫게 되자 무력수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로 전략을 전환한 데서 비롯되었다.

소련은 이 전략의 수행에 장애요인인 미군의 철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1948년 12월 소련 점령군의 철수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고,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에서 소련 국방상 주재하에 북한·소련·중공(北韓·蘇聯·中共)의 군사대표가 전략회담을 열어 향후 18개월 안(1950년 6월까지)에 북한군을 6개 돌격사단, 8개 전투사단, 8개 예비사단, 2개 전차사단의 지상군을 주축으로 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육성, 전쟁준비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있어서도 전쟁발발 전까지 10개 보병사단, 1개 전차여단(전차 대수는 2개 사단 규모), 3개 특수연대, 5개 경비연대로 증강되어 목표전력에 근접하였지만, 당시 북한군의 규모가 3개 사단이었던 데 견주어 본다면 놀랄 만한 정도의 목표 설정이었다.

소련으로부터 주로 전쟁물자가, 중공으로부터는 주로 중공군 내

의 한인출신(韓人出身) 병력이 북한으로 유입되어 북한군의 전력
이 날로 증강되어 가고 1949년 10월 1일 중국에 공산정권이 수립
되자,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에 평양(平壤)을 떠나 비밀리에
스탈린을 방문하여 남북한 통일의 방법, 북한 경제개발의 전망,
그리고 공산당 내부문제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북한의
통일과업 선제남침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 문제
의 최종 결정은 북한과 중공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중공측의 의견이 부정적이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
지 이 문제의 결정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모스크바 회담 결과에 따라 김일성은 동년 5월에 북경으로 모
택동을 방문하여, 북한의 전쟁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으며 필
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평양으로 복귀하였다.

이에 앞서 김일성은 모스크바에서 복귀후 곧 남침공격 작전계
획을 수립하여 스탈린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와 같이 북
한의 남침계획은 3자(김일성·스탈린·모택동) 간에 긴밀한 협의하
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남침일자(南侵日
字)는 6월 25일로 정해졌다. 이 날이 일요일(日曜日)이므로 경계
가 소홀할 것을 예상하여 기습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이었다.
이로써 북한군의 선제타격 작전계획이 완성되었다.

이 남침계획의 기본전략은 1950년 6월 말에 전면공격으로 신속
히 서울을 점령하고 인민봉기를 유발하여 한국정부를 전복하는
한편, 북한군이 신속히 남해안까지 전개하여 미 증원군의 한반도
상륙을 막아서 1개월 내에 전쟁을 종결하여 8월 15일 해방 5주년

기념일까지 서울에 통일인민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공격부대들은 6월 12일부터 주둔지를 출발하여 38도선 북방 10~15km 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시작하였고 지원부대도 피지원부대 전개지역으로 6월 23일까지 이동을 완료하여, 공격개시를 위한 최종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국군은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38도선 방어임무를 인수하였는데, 국군이 정부수립과 동시에 창설되었지만 국토방위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하였으며 적의 남침위협이 고조되고 방어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육군·해군·공군의 3개 군으로 정립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육군은 8개 사단 규모로서, 제1사단이 개성(開城) 방면, 제7사단이 철원(鐵原) 방면, 제6사단이 춘천(春川) 방면, 제8사단이 동해안 강릉(江陵) 방면, 그 밖에 제17연대가 옹진반도에서 38도선을 경계중이었다.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가 서울에, 제2사단이 대전(大田), 제3사단이 대구(大邱), 제5사단이 광주(光州)에 사령부를 두고 각각 도별로 후방지역작전을 수행중이었다.

이와 같은 방어계획 목표와 부대배치에 토대를 두고 작성된 육본작전명령 제38호 및 육군방어계획은, “방어중점을 의정부(議政府) 지구에 두고서 제일선(전방방어지대)에 3개의 진지선을 설치하고 군을 제일선부대, 군예비대의 2개 방어체대로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전방방어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저지격퇴한다. 그리고 경찰 및 청년방위대 등 준군사적 요소로써 후방경계부대를 편성하고 해·공군 작전계획과 협조하에 후방지역작전을 실시한다.”라는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병력과 장비는 북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하였으며 이는 국군의 방어준비태세상 근본적인 취약점과 위협이 되었다. 북한군의 전력은 계속 증강되어 남침 직전의 총 병력이 20만 명에 가까웠으나 국군은 10만 여 명밖에 안 되었으며 장비도 그 차이가 심하여 북한군은 T-34 전차 242대, 전투기를 주종으로 하는 항공기 211대를 보유한 데 비하여 국군은 전차가 전무하였고 항공기도 연락용과 연습용을 합하여 22대밖에 없어 비교가 안 되었다. 또한 북한군은 122밀리 신형곡사포를 비롯하여 총 522문의 곡사포와 120밀리 박격포를 포함한 총 1,728문의 박격포를 보유한 데 비해, 국군은 105밀리 M3 곡사포 91문과 81밀리 박격포와 61밀리 박격포를 합하여 960문뿐이었다.

그리고 경계태세는, 1950년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전쟁준비는 완료되었고 남침은 시간문제만 남겨두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가 반복되고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5~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경고하였는가 하면, 맥아더 장군도 3월 10일 워싱턴으로 보낸 비밀정보보고서에서 “최근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북한이 6월에 남한을 침략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등 5~6월 위기설이 과다한 가운데 세 번에 걸친 경계강화 조치가 취해졌었다. 즉, 5·1 노동절을 전후하여, 다음으로는 5·30 선거의 혼란기를 틈탄 침략과 폭동을, 그리고 북한의 6·7 남북한 선거제외와 6·10 요인교환제외 등 강화되는 평화공세가 남침흥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경계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徵候)를 포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 23일 24:00부로 동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으며, 다음날인 24일(토요

일)에는 외출·외박의 실시와 농번기에 즈음한 휴가도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의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휴일을 즐기려 하였다. 이리하여 약 1/3에 해당되는 병력이 주말에 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한편, 6월 24일 육군본부 상황실에서는 22~23일에 입수된 첩보를 분석하고 북한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데 우려를 하고 있던 차에, 제7사단으로부터 “북한군 군관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아측을 향하여 지형정찰을 하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자, 여러 첩보를 분석하여 “북한의 전면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며 이는 이 날이나 다음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날 오후에 육군본부에서 총참모장과 일반참모들의 긴급회합이 있었으나 상황장교들의 대책(비상경계령 해제의 즉각중지, 휴가 및 외출 중지 등) 건의가 수용되지 않고 다만 첩보대를 포천, 동두천, 개성 등지에 파견하여 적정을 살피고 그 결과를 다음날(25일) 08:00까지 보고하라는 지시뿐이었다. 또한 이 날 밤에는 육군회관 장교구락부에서 각급 참모 및 지휘관들이 다수 참석하여 밤늦도록 연회를 벌였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개시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만 3년하고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다.

이 기간에, 쌍방은 38도선을 각각 3회씩이나 넘나들면서 남으로는 낙동강(洛東江), 북으로는 압록강(鴨綠江)까지 오르내리면서 전국토(全國土)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각종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치른 한국전쟁은 대체로 다음의 표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진전되었다.

단 계	진 출 선	진 출 기 간	소 요 일 수
1. 북 한 군 남 침 기	38도선 → 함안-왜관-포항	'50. 6. 25~ '50. 9. 15.	82일 (2개월 20일)
2. 유 엔 군 반 격 및 북 진 기	낙동강선 → 정거동-초산-혜산 진-청진	'50. 9. 15~ '50. 11. 25.	71일 (2개월 10일)
3. 중 공 군 침 공 및 유 엔 군 재 반 격 기	압록강선 → 평택-제천-삼척 → 문산-화천-간성	'50. 11. 25~ '51. 6. 23.	210일 (6개월 28일)
4. 교 착 전 기	38도선 → 판문점-철원-남강	'51. 6. 23~ '53. 7. 27.	764일 (25개월 4일)

가랑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짙은 안개가 산골을 메운 이른 새벽('50. 6. 25, 04:00), 한반도의 허리가 부러지는 폭음과 섬광이 새벽의 고요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그들의 계획대로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야포와 박격포의 공격준비사격과 더불어 일제히 시작된 것이다. 북한군은 서쪽의 용진반도로부터 개성, 동두천, 포천, 춘천, 주문진에 이르는 38도선 전역에서 지상공격을 개시하는 한편, 강릉 남쪽 정동진과 임원진에 육전대와 유격대를 상륙시켰다.

서울을 목표로 정한 북한군의 주공인 제1군단은 연천과 운천에서 의정부에 이르는 축선과 개성에서 문산으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전투력을 집중하였으며, 춘천, 강릉을 목표로 한 조공인 제2군단은 화천-춘천 접근로에 중점을 두고 소련제 T-34 전차를 앞장

세워 일거에 국군의 38도선 방어진지를 돌파하고 남진을 계속하였다.

기습공격을 받게 된 한국군은 우선 전방방어 병력만으로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한편, 후방 주둔사단을 긴급히 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에 대응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38도선이 돌파당하고 6월 28일에는 서울과 춘천 그리고 강릉이 실향되었다.

그 후 한국군은 한강(漢江) 이북 지역에서 철수한 병력과 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병력을 통합하여 임시로 편성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의 지휘하에서 한강방어작전을 수행하여 7일 간을 그곳에서 지탱한 후에 7월 4일 한강선을 돌파당하게 되어 평택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중부전선에서는 7월 2일에 원주(原州)가 실향되었으며, 동부전선에서는 7월 4일 삼척(三陟)이 실향된 후 지연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군의 파병이 결정되고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미 제24보병사단의 선두부대가 평택에 도착하게 되었으며, 한국군은 7월 4일에 평택-제천-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유엔군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군 및 유엔군은 여전히 상대적인 전투력의 열세를 만회하지 못한 채 북한군의 계속적인 압력에 밀려 차령산맥-금강-소백산맥선에서도 이들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하고 부득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8월 1일에는 낙동강선인 마산-왜관-영덕을 연하는 선까지 물러나게 되었다.

한국군 및 유엔군은 이러한 지연작전을 거듭하는 동안 남한 국토의 거의 90%를 상실하였으나, 그 동안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고 미 제8군사령부도 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부로 이양되었으며, 유엔군이 제해권(制海權)과 제공권(制空權)도 확보하는 등 한국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유엔군의 작전지휘체제와 작전기반이 갖추어졌다.

그 동안 한국군도 2개 군단, 5개 사단으로 재편성되어 전쟁 직전의 병력수준으로 전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전투경험도 쌓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의 해·공군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해군이 한국 작전지역에 도착하였고 미 지상군은 3개 사단 2개 연대 규모로 증강되었다.

이와 반면에 북한군은 그 동안의 계속된 공세행동으로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게 되어 사단의 전투력은 50~60% 수준으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보충이 뒤따르지 못하였으며, 병참선은 300여 km로 신장되고 유엔 공군에 의해 보급로가 차단되는 등 전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한군의 공세작전이 거의 한계점에 이를 무렵, 한국군과 유엔군은 한국군 5개 사단과 미군 3개 사단을 마산-남지-왜관-낙정리-영덕에 이르는 240km에 달하는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하고 비교적 조밀하게 압축된 방어진역에서 전세 만회를 위한 방어태세에 임하고 있었다. 이 낙동강 방어선은 한국군과 유엔군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고 반격작전을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였으며, 일명 부산교두보(釜山橋頭堡) 또는 워커 라인이라고도 불리었다.

낙동강선까지 진출한 북한군은 마지막 남은 총력을 기울여 8월 5일부터 낙동강 도하공격을 개시하여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8월 공세('50. 8. 5~20)와 9월 공세('50. 8. 31~9. 15)를 감행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려 하였으나 함안-창녕-왜관-영천-포항선까지밖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 공격은 한반도의 최남단에서 포위망을 압축하여 일격에 부산까지를 점령하기 위한 북한군의 마지막 공격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리한 작전으로 말미암아 북한군은 많은 손실을 입게 되고 이에 대한 후속지원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9월 중순경 그들의 전력은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반면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계속된 전력의 보충과 증원부대의 도착으로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작전의 주도권은 한국군 및 유엔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습공격으로 개시된 북한군의 남침공격은 일일 평균 10km의 속도로 낙동강선까지 진출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그곳에서부터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대구마저도 점령하지 못한 채 공세가 꺾이고 말았으며, 공격개시 82일 만인 9월 15일 이후에는 한국군 및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그들의 기도가 좌절되고 말았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9월 중순 이후 작전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자, 1950년 9월 15일의 인천상륙작전(仁川上陸作戰)과 더불어 낙동강 전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을 단행하였다.

인천상륙부대인 미 제10군단은 9월 15일 기습적인 인천상륙에 성공하여, 그 이튿날에는 교두보(橋頭堡)를 확보한 다음 경인가도로 진출하여 경미한 북한군의 저항을 물리치고, 9월 18일에는 김포(金浦)를 점령하였으며 9월 19일에는 한강선에 이르게 되어 그

곳에서 도하작전을 전개, 서울 탈환작전을 개시하였다.

인천상륙작전에 뒤이어 9월 16일에는 미 제8군도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여, 약 1주일 간의 치열한 전투를 치른 끝에 9월 22~23일에는 북한군의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에, 북한군은 9월 23일 이후 전 전선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유엔군이 경부축선과 호남 우회로를 따라 진격하였고 한국군은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중앙선 축선과 동해안 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서울이 실패된 지 90일 만에 이를 수복하고 97일 만에 38도선을 회복하였다.

그 후, 38도선 이남 지역을 회복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전쟁 재발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군을 완전히 격멸할 목적하에 10월 1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군단별로 각각 38도선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총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한국군 및 유엔군의 진격은 순조롭게 진전되어 동부의 한국군 제1군단은 10월 10일에 원산(元山)을, 17일에 함흥(咸興)을 점령하였으며, 서부의 미 제1군단은 10월 18일에 평양을 탈환하였다. 그리고 중부의 한국군 제2군단은 10월 18일 양덕을 점령한 후 평양 탈환작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천·강동으로 서진하다가 다시 북상하여 10월 23일에는 청천강선(회천)까지 도달하였다. 이때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계획은 그 시행이 지연되어 원산 외항에서 상륙준비를 하고 있었다.

청천강선에 도달한 한국군 및 유엔군은 10월 24일에 그 곳에서 한·만 국경선을 향한 총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월 25일 한국군과 유엔군이 박천·운산·온정리·회천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을 때, 불의에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중공군은 운산, 온정리, 회천 방면으로부터 대부대를 투입하여 한국군 및 유엔군 공격부대의 후방을 차단하기 위하여 은밀히 밀려들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10월 26일에는 한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사단의 선두부대가 압록강변의 초산을 점령하였으며, 서부지역에서는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24사단이 11월 1일에 신의주 남방 27km 지점인 정거동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수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중공군의 공격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은 일단 공세가 좌절된 채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11월 7일에는 청천강선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때 한국군과 유엔군을 뒤쫓아 공격하던 중공군도 일단 공격을 멈추고 청천강 북쪽 적유령산맥으로 이동해 감으로써 일단 접적이 단절된 채 전선은 소강상태가 되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되자, 공산군 지역에 대한 공중공격을 강화하는 한편, 후방으로부터 1개 군단(제9군단)을 청천강선에 추가로 투입하여 미 제8군의 전력을 보강한 다음 11월 24일을 기하여 다시 총공세를 감행하였다. 이때까지도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 규모와 그들의 기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당시에 출현한 중공군을 제한된 병력으로서 국지적인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전은 1개월 이내에 북한군을 격멸하고 한·만 국경을 점령하여 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것을 전제로 한 공세였으

며, 일명 크리스마스 공세라고도 불리었다. 이때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제1군단이 청진 및 무산 방향으로 진격중이었고 미 제10군단은 10월 26일부터 원산과 이원에 상륙하였으며, 그중 미 제7사단은 11월 21일에 압록강변의 혜산진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 해병 제1사단은 장진호 부근에서 무평리 방향으로 공격을 실시하여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연결을 지은 다음 만포진-강계-희천을 잇는 중공으로부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북한군과 중공군을 지대 내에서 포위 섬멸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참전 병력을 70,0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1월 24일 재공격을 개시한 미 제8군은 다음날 정주-운산-구창동-덕천-영원선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때 또다시 대대적인 중공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동부의 미 제10군단은 11월 27일 에야 그들 부대들이 이미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 놓이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이 대대적으로 한국전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예기치 못하였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만 국경선을 목전에 둔 채 반격작전을 개시한 지 71일 만에 철수작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중공군의 본격적인 개입이 확인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전황이 급전직하로 불리하게 되자, 한국군 및 유엔군은 1950년 11월 24일 개시하였던 공격을 중단하고 수세로 전환하여 전면적인 철수작전을 단행하게 되었다.

중공군은 항미원조(抗美援朝)라는 명분하에 의용군이란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위하여 10월 중순부터 압록강을 넘어 북

한지역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10월 하순까지 제13병단 이하 6개 군 18개 사단이 북한 지역으로 잠입하여 적유령산맥 남단 일대에 전개(1개 군은 장진호 북방으로 전개)한 후 10월 25일 제1차 공격을 실시하여 한국군과 유엔군을 청천강 남쪽으로 물러나게 하였다.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제9병단 이하의 12개 사단이 북한 지역으로 잠입하여 개마고원 및 장진호 부근에 전개한 후, 11월 25일 제2차 공격을 실시하여 유엔군 전선을 동서로 양분시킨 다음 이를 각개 격파할 계획이었다.

이때 북한군은 재편성중인 제1군단을 서부전선에, 제3, 제4, 제5군단을 동부전선에 전개하여 중공군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군단은 한국군 및 유엔군의 후방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북한군 제6, 제7, 제8군단은 한·만 국경선 일원에서 신편중에 있었다.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일단 공세가 꺾인 한국군 및 유엔군은 미처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11월 30일을 고비로 철수가 가속화되었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고 12월 중순에는 38도선 북방까지 후퇴하게 되었으며,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형성하고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은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함으로써 부득이 홍남으로 철수하여 12월 14~24일 간에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한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38도선 방어를 위하여 배치하고, 한국군 2개 사단과 미군 5개 사단을 평택

－원주－삼척선에서 운용하기 위하여 예비로 확보하였다.

청천강을 넘어 평양을 점령한 중공군 제13병단은 대부분의 병력을 경의선과 중부의 성천－양덕－곡산－철원 축선으로 투입하여 12월 하순에는 개성－철원 북방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제9병단은 장진호－함흥 축선에서 미 제10군단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하였으나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계획대로 진출하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북한군 제3, 제5군단과 제2전선부대인 제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남하하여 38도선 북방에 전개하였다.

이와 같이 12월 하순, 38도선 북방에 전개를 완료한 공산군은 12월 31일 주공을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으로 지향시키고, 화천－춘천－원주 축선에 조공을 지향시켜 38도선을 돌파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개시하였으며, 이 공격을 중공군의 제3차 공세 또는 신정공세(新正攻勢)라고 칭하였다.

이로 인하여 38도선을 방어중이던 한국군 및 유엔군은 격전을 치르면서 다시 38도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으며, 1951년 1월 4일에는 서울을 빼앗기고 이어 7일에는 평택－삼척선으로 후퇴하여 그 곳에 새로운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신정공세로 남침을 계속하여 1월 8일에는 수원－여주－강릉선까지 진출하게 된 중공군도 그 동안에 입은 전력의 손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수세로 전환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역량이 한계점에 다다른 것을 간파한 한국군 및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을 기하여 일제히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유엔군은 지역의 확보보다는 공산군부대의 격멸에 작전의 주

안을 두고 축차적이며 협조된 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군 및 유엔군이 한강 남안—횡성선에 이르렀을 때 다시 중공군의 반격(제4차 공세 : 1951. 2. 11~18)에 부딪쳐 지평리, 원주 일대에서 한차례의 공방전을 치렀으나 이를 격파하고 진격을 계속하였다. 한국군 및 유엔군은 3월 15일에 서울을 탈환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전진을 계속하여 3월 말에는 38도선을 또다시 회복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38도선 방어에 유리한 임진강—영평천—화천 저수지—남애리를 연하는 요지를 점령하고 중부지역에서는 철원—김화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때 중공군의 다섯 번째의 공세가 되는 춘계공세가 시작되었다. 이 공세는 중공군의 참전 이후 최대병력이 동원된 마지막 공세로서, 당시 중공군의 가용병력은 4개 병단 16개군 51개 사단 규모였다. 중공군은 이 병력과 북한군을 총 동원하여 4월(4. 22~30)과 5월(5. 16~22) 두 차례에 걸쳐, 4월에는 서부전선(개성—화천)에 5월에는 동부전선(양구—인제)에 전력을 집중시켜 총 공세를 취하였다. 한국군 및 유엔군도 사력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였으며, 무제한으로 화력을 운용하여 그들에게 심대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공산군의 공세는 구파발—홍천—하진부리—강릉을 연하는 선에서 저지되었다.

공산군의 춘계공세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한국군 및 유엔군은 곧 반격작전을 계속하여 5월 말에는 세 번째로 38도선을 회복하고 6월 15일에는 문산—연천—철원—김화—화천—간성에 이르는 주요지역을 점령한 다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공산군도 그 북쪽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이때 유엔군이 공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세는 유리한 상태에 있었으나 전쟁 전의 원상 상태에서 휴전을 모색하려는 미국의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었으며, 공산군이 수세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춘계공세 이래 연이은 손실로 급격한 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공격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때부터 전선은 고착화되었으며, 전투는 국지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적인 주도권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전투만을 반복하기에 이른다.

쌍방은 다시 형성된 38도선 부근의 새로운 전선(임진강구-연천-철원-김화-산양리-장평리-서화-간성)에서 상호 대치하게 되었으며, 전투는 소강상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공산군측이 1951년 6월 23일 소련의 유엔대표를 통하여 휴전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동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휴전회담이 개시됨으로써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쌍방은 휴전협정 조인시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한다는 데에 합의함으로써, 휴전회담 기간의 군사작전은 휴전회담의 추이와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즉,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전선이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회담이 결렬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전투는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한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하던 전선은 1951년 8월에 접어들면서 다시 격렬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개성에서는 양측의 대표가 겨우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

한 군사분계선의 설정과 비무장지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협의 중에 있었다. 유엔군측은 당시 쌍방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공산군측은 38도선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공산군측이 회담장소인 비무장지대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가 하면, 유엔군측이 비무장지대를 폭격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면서 회담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회담은 8월 23일 중단되고 말았다.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유엔군은 휴전 당시의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하는 안을 관철시키기로 하고 휴전회담 개시 당시의 방어선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공격작전을 단행하였다. 10월 말까지 계속된 이 공격은 당시의 대치선에서 평균 10km의 중심지대 내에서 치러졌으며, 밀도 높은 전투를 전개함으로써 쌍방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특히 펀치볼(해안 분지) 부근의 전투에서는 쌍방간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공산군측은 피해가 가중되고 전선에서 다소나마 물러나게 되자, 10월 25일 휴전회담에 응하여 유엔군측 안을 수용하였으며, 회담장소는 판문점(板門店)으로 이전되었다. 그 밖의 의제도 30일 이내에 합의될 것을 전제로 하여, 쌍방은 1951년 11월 27일 당시의 접촉선(임진강구-판문점-산명리-금성-송정-신대리-남강)을 잠정군사분계선으로 책정하였다.

이로써 전선은 다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었고, 곧 전쟁이 종식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쌍방이 그 후 30일 이내에 합의하기로 한 다른 의제의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이미 합의된 잠정군사분계선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1952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선은 다시 가열되기 시작하여,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제한된 국지전 형태의 고지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한국군 및 유엔군은 휴전회담이 포로 교환 협상의 부진으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결렬 상태에 이르자, 휴전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전세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지적인 고지쟁탈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공산군도 역시 이러한 전술로 맞섰다.

대표적인 고지쟁탈전으로는 불모고지전투, 포크참고지전투, 백마고지전투, 저격능선전투, 수도고지전투, 크리스마스고지전투, 단장의 능선전투, 피의 능선전투, 편치볼전투, 351고지전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수많은 전투가 이 기간에 일어났다. 이들 전투는 비록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 특유의 별칭들이 의미하듯이 지역을 수없이 탈취하고 탈취당하는 공방전이 계속되는 동안, 쌍방간에는 전쟁 초년도의 격동기에 못지않은 많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고지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스탈린 수상이 사망하자 4월부터 휴전회담이 재개되었으며 6월 8일 포로송환협정이 타결됨으로써 휴전협상의 모든 의제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7월 27일 10:00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이 날 22:00를 기하여 모든 적대행위가 종식되고 휴전이 성립되었다.

전쟁기간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약 115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민간인은 약 100만 명이 희생되고 약 1,000만 명의 전재민(戰災民)이 발생하였고, 재산의 피해는 한국에서만 약 61만 동의

주택을 포함한 수많은 시설과 재산이 파괴되었으며, 공산군측도 165만~200만 명의 병력이 손실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제2장부터 수록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국이 38도선 이북지역이었던 철원·화천·간성 일대와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차지하였으나 웅진반도와 개성-사천 일대를 상실하였으며, 38도선에 의한 분계선 대신에 임진강 하구-판문점-철원-거진 북방을 연결하는 선에 남북으로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된 것이라 하겠다.



護國英靈의 忠義와 偉勳을 推仰하고자
세운 顯忠塔(國立顯忠院, 서울)

第 2 章 國軍의 被害

第 1 節 概 說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동시에 정식으로 발족한 국군은 꾸준히 병력을 증강하여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는 육군이 보병 8개 사단(제1, 제2, 제3, 제5, 제6, 제7, 제8, 수도)과 2개 독립연대(제17, 기갑) 그리고 3개 특수부대(독립 제1대대, 영동포학원, 육군보국대대)와 기타 예비군(호국군부대, 청년방위대)을 보유하게 되었다.

해군은 2개 특무정대(제1, 제2특무정대)와 4개 해상방위정대(제1, 제2, 제3정대 및 훈련정대)로 발전하였고 또한 해군본부 산하에 해병대사령부(海兵隊司令部)를 설치하였다. 한편, 공군은 미군정당국의 지연정책으로 1949년 10월 1일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발족하였고 그 이후에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여 체제정비만을 기하는 정도에 그쳐 연락기 12대와 연습기 10대를 보유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육군은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우세한 전력에 밀려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해야 하는 극한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하였으나 인적, 물적인 손실을 보충함은 물론 병력과 장비의 급속한 증강을 도모하고 우방국의 지원을 얻어 전세를 만회할 수 있었으며, 그 후 낙동강 전선에서의 반격작전과 북진작전 그리고 38도선 부근

의 교착전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하여 휴전 당시에는 전선의 절반 이상을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8개 사단에 불과하였던 육군의 전력이 전쟁 말기에는 18개 사단으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94,000명에서 550,000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해군은 전쟁발발 당시 4개 정대로써 작전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하여 전쟁 말기에는 6개 전대를 기간으로 한 1개 함대로 성장하였고 병력도 개전 초기의 5,700여 명에서 1953년도 말에는 15,000여 명 수준으로 증강되었으며, 해병대는 창설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개 대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으나, 전쟁 기간 중에 급진적으로 성장하여 휴전 당시에는 사단 규모로 성장되었으며, 병력도 개전 초기의 1,200여 명에서 1953년도 말에는 25,000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한편, 공군은 전쟁 발발 당시 소규모의 비행단 체제로서 연락기와 연습기 등 소형 항공기 22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쟁 말기에는 독립 작전능력을 구비하였으며, 휴전 당시에는 2개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병력도 개전 초기의 1,800여 명에서 13,000여 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국군은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손실보충은 물론, 각급제대의 증·창설을 위하여 전쟁기간 동안 꾸준히 병력을 보충하였으며, 각군별 총 보충병력은 육군이 71만 8천여 명, 해군(해병 포함)이 3만 7천여 명 그리고 공군이 1만 3천여 명으로 총 77만여 명이나 되었다.

각군별 및 연도별 보충병력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보충병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769,353	213,447	170,299	148,944	236,663
육 군	718,668	205,476	156,394	133,049	223,749
해군(해병포함)	37,239	6,613	10,732	11,173	8,721
공 군	13,446	1,358	3,173	4,722	4,193

그리고 국군의 종합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 각군별로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 수록하였다.

○ 전/사망 및 실종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병 포함)	공 군
총 계	157,291	155,179	1,974	138
전 / 사 망	137,899	135,858	1,903	138
실 종 자	19,392	19,321	71	-

○ 부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병 포함)	공 군
부 상 자	450,742	443,634	7,108	-

○ 포로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비 고
총 계	8,669	
병 상 귀 환 포 로	471	
송 환 포 로	7,862	
송 환 거 부 포 로	335	
기 타 포 로	1	조 창 호(예, 중위)

* 각군별 구분은 자료의 미비로 생략하였음

○ 송환거부포로 처리결과

단위 : 명

총 계	유엔군측으로 귀환	인도로 이송	공산군측으로 전향
335	8	2	325

○ 주요장비 피해현황

구 분	장 비 명	단 위	수 량
육 군	카 빈 소 총	정	38,333
	M1 소 총	정	85,560
	기 관 총 류	정	3,419
	로 켓 포 류	정	2,761
	박 격 포 류	문	1,572
	곡 사 포 류	문	181
	무 반 동 총 류	정	160
해 군 (해병 포함)	함 정 AMC - 305 외	척	8
	소 총 류	정	225
	기 관 총 류	정	15
	박 격 포 류	문	3
	곡 사 포	문	1
공 군	L - 형 항 공 기	대	45
	T - 형 항 공 기	대	20
	F - 형 항 공 기	대	65

第 2 節 陸 軍

1. 概 要

전쟁발발 직전에는 보병 8개 사단과 2개 독립연대를 주축으로 하여 총 병력이 도합 9만여 명으로 전쟁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3년여의 전쟁기간을 거치면서 각급부대의 증·창설로 휴전 당시에는 일약 3개 군단, 18개 사단으로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으며 총 병력도 55만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그러나 피해도 이에 못지않게 전사상자 60여 만명과 다량의 장비 및 물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하 각종 통계는 육군본부의 한국전쟁 피해통계 자료수집보고서('95. 12. 12, 국방부)를 주로 참조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육군의 총 보충병력은 71만 8천여 명이었으며, 연도별 보충병력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보충병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718,668	205,476	156,394	133,049	223,749
장 교	33,919	10,013	7,484	6,096	10,326
사 병	684,749	195,463	148,910	126,953	213,423

2. 人的 被害

가. 피해종합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 망	실 증	부 상
총 계	598,813	135,858	19,321	443,634
전 투 손 실	370,746	133,016	19,321	218,409
비전투손실	228,067	2,842	-	225,225

나. 입원환자 현황(1950. 6. 25~53. 12. 31)

(1) 총 괄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상	비 전 상
총 계	443,634	218,409	225,225
'50. 6. 25~12. 31.	93,554	68,757	24,797
1951	105,061	60,912	44,149
1952	111,671	45,879	65,792
1953	133,348	42,861	90,487

* ① 이동외과병원급 이상 의무시설의 입원 통계임.

② 1953년도는 8~12월(5개월)의 46,115명 포함.

(6·25사변 중 환자통계연보, 육군본부, 1968, p. 16.)

(2) 병과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443,634	93,554	105,061	111,671	133,348
보 병	386,266	86,217	92,613	100,461	106,975
포 병	14,963	2,345	2,691	1,227	8,710
공 병	15,046	1,894	4,069	4,031	5,053
통 신	9,360	1,309	1,307	1,905	4,839
의 무	6,031	829	1,812	1,325	2,065
병 기	2,772	168	662	647	1,295
병 참	1,532	159	411	436	526
수 송	1,036	50	51	224	711
현 병	1,891	145	713	482	541
기 갑	372	231	70	25	46
경 리	315	4	96	110	105
부 관	213	-	83	80	50
정 훈	150	2	16	13	119
감 찰	170	12	81	43	34
법 무	104	8	35	45	16
군 악	34	4	13	9	8
기 타	3,389	177	349	608	2,255

* 1950년 망라기간은 6. 25~12. 31.까지임

(3)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상	공 상	사 상
총 계	장 교	13,062	7,314	812	4,936
	사 병	395,049	203,797	18,442	172,810
	비 군 인	35,523	7,298	3,144	25,081
	계	443,634	218,409	22,398	202,827
1950	장 교	2,777	2,370	50	357
	사 병	86,699	63,980	3,825	18,894
	비 군 인	4,078	2,407	721	950
	계	93,554	68,757	4,596	20,201
1951	장 교	3,685	1,922	243	1,520
	사 병	95,857	56,461	5,557	33,839
	비 군 인	5,519	2,529	1,368	1,622
	계	105,061	60,912	7,168	36,981
1952	장 교	3,453	1,379	268	1,806
	사 병	98,793	43,876	4,573	50,344
	비 군 인	9,425	624	585	8,216
	계	111,671	45,879	5,426	60,366
1953	장 교	3,147	1,643	251	1,253
	사 병	113,700	39,480	4,487	69,733
	비 군 인	16,501	1,738	470	14,293
	계	133,348	42,861	5,208	85,279

* 1950년 망라기간은 6. 25~12. 31.까지임

(4) 연도별 재복무 퇴원자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상	공 상	사 상
총 계	장 교	10,553	6,374	581	3,598
	사 병	208,276	109,371	12,702	86,203
	비 군 인	33,909	6,603	3,055	24,251
	계	252,738	122,348	16,338	114,052
1950	장 교	2,212	2,100	24	88
	사 병	37,145	31,805	1,897	3,443
	비 군 인	842	91	526	225
	계	40,199	33,996	2,447	3,756
1951	장 교	2,957	2,084	187	686
	사 병	60,070	42,414	5,394	12,262
	비 군 인	7,191	3,961	1,278	1,952
	계	70,218	48,459	6,859	14,900
1952	장 교	2,626	1,020	180	1,426
	사 병	50,579	16,060	2,577	31,942
	비 군 인	9,765	1,945	802	7,018
	계	62,970	19,025	3,559	40,386
1953	장 교	2,758	1,170	190	1,398
	사 병	60,482	19,092	2,834	38,556
	비 군 인	16,111	606	449	15,056
	계	79,351	20,868	3,473	55,010

* 1950년 망라기간은 6. 25~12. 31.까지임

(5) 연도별 월별 입·퇴원, 제대 및 사망자 현황

(가) 1950년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입 원	퇴 원	제 대	사고퇴원	사 망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6,693	2,400	-	13	40
7 월	15,241	6,289	-	21	230
8 월	18,045	6,556	-	71	277
9 월	17,560	6,986	-	194	475
10 월	9,771	7,206	-	93	304
11 월	12,504	4,379	-	243	200
12 월	13,740	5,937	-	207	200
계	93,554	39,753	-	842	1,726

(나) 1951년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입 원	퇴 원	제 대	사고퇴원	사 망
1 월	9,923	5,034	1,615	383	334
2 월	9,130	3,940	2,122	531	266
3 월	8,418	5,408	1,875	601	335
4 월	8,825	7,841	1,953	947	266
5 월	10,324	9,976	7,901	564	303
6 월	9,924	3,897	6,116	759	358
7 월	5,029	4,834	6,406	594	266
8 월	8,309	5,996	7,397	968	317
9 월	9,636	4,917	8,156	217	294
10 월	10,262	2,621	2,931	468	317
11 월	7,917	3,381	4,659	391	293
12 월	7,996	4,196	2,761	768	332
계	105,061	62,041	53,892	7,191	3,681

(다) 1952년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입 원	퇴 원	제 대	사고퇴원	사 망
1 월	8,481	3,919	2,702	463	366
2 월	6,896	4,340	8,955	428	274
3 월	7,560	5,357	2,183	538	162
4 월	6,865	3,395	4,401	338	152
5 월	5,953	3,600	1,429	382	175
6 월	7,668	2,937	6,021	244	164
7 월	7,293	2,785	8,125	244	137
8 월	7,721	3,547	1,960	260	121
9 월	10,811	4,583	1,264	1,328	195
10 월	17,717	6,479	2,091	1,307	400
11 월	12,922	7,267	8	2,142	301
12 월	11,847	4,996	2,251	2,111	324
계	111,671	53,205	41,390	9,785	2,771

(라) 1953년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입 원	퇴 원	제 대	사고퇴원	사 망
1 월	9,542	5,855	3,662	2,251	364
2 월	9,888	4,240	4,946	1,649	490
3 월	9,221	4,478	-	2,243	478
4 월	8,416	3,358	8,242	1,614	448
5 월	10,057	5,857	9,231	1,707	370
6 월	17,161	4,806	2,425	948	512
7 월	22,948	8,547	2,400	1,124	692
8 월	8,889	6,595	1,458	1,121	267
9 월	8,238	8,279	8,193	853	193
10 월	8,930	5,901	5,158	648	146
11 월	9,965	2,482	5,403	978	131
12 월	10,093	2,842	5,334	966	108
계	133,348	63,240	56,452	16,102	4,199

* 8~12월까지의 입원자는 46,115명임

(6) 연도별 제대자 종합현황

단위 : 명

구 분		명 예 제 대		의 병 제 대	계
		전 상	공 상	사 병 상	
총 계	장 교	378	97	376	851
	사 병	79,145	4,815	66,923	150,883
	계	79,523	4,912	67,299	151,734
1950	장 교	-	-	-	-
	사 병	-	-	-	-
	계	-	-	-	-
1951	장 교	362	84	47	493
	사 병	42,007	1,747	9,645	53,399
	계	42,369	1,831	9,692	53,892
1952	장 교	-	-	281	281
	사 병	12,113	849	28,147	41,109
	계	12,113	849	28,428	41,390
1953	장 교	16	13	48	77
	사 병	25,025	2,219	29,131	56,375
	계	25,041	2,232	29,179	56,452

다. 학도의용군 현황(학도의용군,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94)

(1) 학도의용군의 정의

한국전쟁 발발시부터 1951년 4월까지 대한민국의 학생 신분으로 지원하여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공비소탕, 치안유지, 간호활동, 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학생 혹은 단체이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학생 신분으로서 한국전쟁 전 기간에 걸쳐 국군 또는 연합군에 지원 입대하거나 개인의 자격으로 지원하여 참전하고 제대한 자이다.

(2) 학도의용군 대원수

1951. 4. 현재

출 신 지	인 원(명)	출 신 지	인 원(명)
서울특별시	6,700	전라북도	27,200
경기도	23,500	경상남도	65,000
충청남도	42,000	경상북도	56,000
충청북도	21,500	강원도	6,500
전라남도	23,800	제주도	3,000
총 계 : 275,200명			

* 전투참여 학생 : 50,600여 명(재일유학생 641명 포함)

(3) 전사자 현황

구 분	인 원(명)	비 고
총 계	약 7,000	
국 내 학 도 의 용 군	1,983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45	실종자 포함
용 진 학 도 유 격 대	372	실종자 포함
기 타	4,500	

* 육군의 피해 종합현황에서는 제외하였음

○ 국내 학도의용군 전사자 시·도별 현황

구 분	인 원(명)	학 교 수
총 계	1,983	346
서 울 특 별 시	271	69
경 기 도	110	32
충 청 남 도	49	15
충 청 북 도	38	14
전 라 남 도	151	32
전 라 북 도	545	37
경 상 남 도	198	52
경 상 북 도	289	55
강 원 도	174	22
제 주 도	158	18

* 학교명이 불명확한 학교수는 제외하였음

3. 物的 被害

(세부내용은 6·25사변 후방전사 군수편, 육본, 1955년판 참조)

가. 양곡류 망실 현황(1950. 6. 25~53. 7. 27)

구 분	단 위	계	1952. 4~53. 1	1953. 4~53. 7
백 미	kg	94,843	14,093	80,750
정 맥	kg	640	-	640
압 맥	kg	4,256	4,172	84
대 두	kg	900	-	900
소 맥 분	lb	1,509	1,359	150
화 랑 연 초	대	66,186	66,186	-
미 제 연 초	대	6,704	6,584	120
건 빵	대	185,816	83,024	102,792
야 전 식 량	상자	1,849	1,690	159
식 염	kg	14,023	12,803	1,220
고 추 장	kg	2,627	1,573	1,054
된 장	kg	2,843	377	2,466
백 설 탕	kg	1,659	35	1,624
멸 치 통 조 립	관	34,980	33,604	1,376
오 징 어 조 립	관	27,531	27,381	150
건 어 포	대	69	69	-
공 마 대	매	115	115	-
공 상 자	매	22,911	22,911	-

. 나. 병참장비 망실 현황(1951~52. 1. 31)

구 분	단위	계	1 9 5 1	1 9 5 2
철 모	개	171,987	153,847	18,140
화 이 바 모	개	188,283	159,344	28,939
방 한 모	개	148,048	140,660	7,388
러 닝 서 츠	매	183,232	175,227	8,005
팬 티	매	397,197	382,188	15,009
동 내 의 상	매	409,364	366,841	42,523
동 내 의 하	매	355,241	316,567	38,674
작 업 복 상	매	408,820	362,225	46,595
작 업 복 하	매	423,667	382,873	40,794
방 한 복 상	매	124,837	113,419	11,418
방 한 복 하	매	135,600	122,731	12,869
약 모	개	192,366	172,033	20,333
사 병 외 투	개	116,512	114,726	1,786
야 전 상 의	개	121,398	121,398	-
군 화	족	129,495	129,495	-
훈 련 화	족	561,729	561,729	-
방 한 화	족	96,979	96,979	-

구 분	단위	계	1 9 5 1	1 9 5 2
배 낭	개	149,062	149,062	-
모 포	매	241,548	241,548	-
우 의	매	174,080	174,080	-
수 통	개	77,361	77,361	-
반 합	개	80,799	80,799	-
곡 팽 이	개	8,281	8,281	-
야 전 삽	개	59,353	59,353	-
각 반	개	95,282	95,282	-
식 기	개	84,355	84,355	-
천 막 (대)	매	536	536	-
개 인 천 막	매	230	230	-
M1 탄 입 대	개	69,938	69,938	-
카 빈 탄 입 대	개	29,645	29,645	-

다. 차량류 망실 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대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트레라 1/4톤(2W)	68	46	11	-	11
트레라 1톤(2W)	120	55	36	-	29
트레라 Aumo.M10	77	20	17	-	40
트레라 1톤 급수	29	18	11	-	-
트럭 1/4톤(4×4)	711	382	250	3	76
트럭 3/4톤(앰브)	23	11	11	1	-
트럭 3/4톤 W/O	238	116	101	2	19
트럭 2톤 카고	494	367	105	-	22
트럭 2톤 Wear	2	1	1	-	-
트럭 2톤 Dump	17	4	13	-	-
트럭 도요다카고	341	53	270	4	14
트럭 닛산카고	161	26	133	1	1
트럭 Touzu Cargo	2	1	1	-	-
트럭 도요다덤프	9	2	6	-	1
트럭 닛산덤프	45	-	43	1	1
Carriage mot N36	8	-	-	-	8
트럭 1 1/2톤 P-O	86	62	6	-	18
트럭 Cton Nrecker	6	4	-	-	2
트럭 4톤 카고	2	-	-	-	2

라. 총포류 망실 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정(문)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카 빈 소 총	38,333	14,785	13,480	1,707	8,361
M1 소 총	85,560	31,250	31,224	4,262	18,824
권 총	1,816	1,283	396	29	108
기 관 단 총	1,666	468	325	58	815
자 동 소 총	4,864	1,379	1,799	360	1,326
공 냉 식 경 기	1,829	631	524	58	616
수 냉 식 중 기	892	316	498	11	67
중 기 관 총 (포)	698	284	292	2	120
로 켓 포 류	2,761	1,173	1,275	35	278
60밀리 박격포	971	341	478	9	143
81밀리 박격포	558	287	236	1	34
4.2인치 박격포	43	-	27	-	16
곡 사 포 류	181	120	60	-	1
M7 유 탄 발 사 기	19,058	1,891	5,714	2,819	8,634
M8 유 탄 발 사 기	2,367	891	1,249	188	39
M1 대 검	84,594	6,823	35,483	14,526	27,762
M4 대 검	38,843	3,591	11,872	7,821	15,559
무 반 동 총 류	160	-	-	3	157
대 전 차 포 류	59	31	28	-	-

마. 통신장비 망실 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대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AN/GRC-9	24	-	24	-	-
BD-71, 72	273	81	184	-	8
C-11	3,428	567	1,659	533	669
EE-8	5,310	1,496	2,929	264	621
HS-30	838	195	469	94	80
I-166	24	14	10	-	-
LC-5	237	82	136	3	16
LC-23	207	76	127	4	-
MC-123	295	35	241	19	-
ME-22	147	139	8	-	-
MX-290	1,545	1,075	391	33	46
PE-75	15	8	5	-	2
PH-358	20	20	-	-	-
PE-210	41	10	25	-	6
RL-27	343	132	193	11	7
RL-31	377	174	189	8	6
RL-39	840	50	577	183	30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SCR-694	239	74	162	2	1
SCR-300	768	346	420	2	-
SCR-536	3,408	412	1,983	365	648
T-45	1,022	406	838	216	17
TL-122	29,912	11,852	10,130	4,706	3,224
TE-33	7,047	1,193	3,363	1,129	1,362
TG-5	71	37	34	-	-
TS-10	2,277	294	886	276	821
BC-191	34	34	-	-	-
PE-95	4	3	1	-	-
PP-68	51	50	1	-	-
PE-110	4	4	-	-	-
SCR-506	164	34	3	-	127
SCR-508	39	38	1	-	-
SCR-510	19	18	-	1	-
TE-21	467	398	60	4	5
TM-184	557	255	266	3	33

第3節 海 軍(海兵 포함)

1. 概 要

해군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는 불과 33척(소해정 26, 수송선 2, 유조선 1, 연안경비정 2, 구잠함 1, 상륙정 1)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쟁 기간에 구잠함 및 소해정을 중심으로 한 4개 정대로써 작전임무를 수행해 가면서 병력과 장비를 꾸준히 증강하여 휴전당시에는 6개 전대를 기간으로 한 1개 함대로 성장하였으며, 병력도 개전 초기의 5,700여 명에서 1953년도 말에는 15,000여 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그러나 피해도 전사상자 1,200여 명과 함정 5척 등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한편 해병은 2개 대대 규모의 미미한 병력과 장비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으나, 전쟁기간 동안에 급진적으로 성장하여 휴전당시에는 사단규모로 증강되었으며, 병력도 개전 초기의 1,200여 명에서 1953년도 말에는 25,0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피해가 막심하여 전사상자 8,000여 명과 다량의 장비 및 물자의 손실을 보았다. 이하 각종통계는 해군본부의 한국전쟁 피해자료보고서(1995. 12. 29, 국방부)를 주로 참조하였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의 손실 보충 및 증·창설부대를 위한 보충 병력의 규모는 해군이 1만여 명, 해병이 2만 6천여 명으로 총 3만 7천여 명이었으며, 연도별 보충병력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보충병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해 군	해 병
총 계	계	37,239	10,356	26,883
	장 교	2,044	947	1,097
	사 병	35,195	9,409	25,786
1 9 5 0	계	6,613	2,330	4,283
	장 교	42	17	25
	사 병	6,571	2,313	4,258
1 9 5 1	계	10,732	2,264	8,468
	장 교	789	343	446
	사 병	9,943	1,921	8,022
1 9 5 2	계	11,173	2,579	8,594
	장 교	751	266	485
	사 병	10,422	2,313	8,109
1 9 5 3	계	8,721	3,183	5,538
	장 교	462	321	141
	사 병	8,259	2,862	5,397

* 한국전쟁 피해자료 보고, 해군본부, 1995

2. 人的 被害

가. 피해종합 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부 상	실 종
총 계	9,082	1,903	7,108	71
해 군	1,194	693	501	-
해 병	7,888	1,210	6,607	71

- * ① 해군사(작전편) 제2집, 해군본부, 1958, 부록 4를 기준
 ② 기존의 실종자 349명을 정리한 117명 가운데 전사처리(46명)와 계속실종(71명)을 해병에서 수정(6·25 당시 실종자 송환 촉구 대책회의 자료, 국방부, 1994)

나. 입원환자 연도별 통계(1950. 6. 25~53. 7. 27)

단위 : 명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4,773	729	1,679	1,416	949
해 군	303	212	58	26	7
해 병	4,470	517	1,621	1,390	942

- * ① 해군사(행정편) 제2집, 해군본부, 1958, pp. 113~115
 ② 입원자 중 원대복귀 : 2,004명

다. 연도별 제대자 통계(1950. 6. 25~53. 7. 27)

단위 : 명

계	1950	1951	1952	1953
3,554	202	326	1,421	1,605

3. 物的 被害

가. 함정 침몰

일 자	함 정 명	인적피해	비 고
1950. 6. 29.	AMC-305	전사 : 8명 부상 : 4명	삼척 근해에서 미 구축함의 오인사격으로 침몰
1950. 9. 28.	YMS-509	전사 : 25명 부상 : 5명	영덕 동방 해상에서 적의 기 뢰에 접촉 침몰
1950. 10. 18.	YMS-516	전사 : 15명 부상 : 11명	원산항 입구에서 적의 기뢰 에 접촉 침몰
1951. 5. 5.	AMC-306	전사 : 1명 부상 : 17명 행불 : 5명	서해 석도 근해에서 적의 기 뢰에 접촉 침몰
1951. 12. 26.	PC-704	전사 : 57명	원산 근해 작전중 적의 기뢰 에 접촉 침몰

* 작전경과보고서 1~11권

나. 함정 손상

일 자	함 정 명	인적피해	비 고
1950. 10. 18.	F-S (영등포)		원산항 입구에서 적의 기뢰 에 접촉, 기관이 파괴되었으 나 후에 수리하여 병원선으 로 사용
1952. 1. 24.	LST-803		서해 석도 근해에서 태풍으 로 좌초
1952. 5. 21.	PF-62	전사 : 21명 부상 : 13명	울릉도 근해에서 미수송함 (MT BAKERAЕ-4)과 충돌 하여 선체가 대파됨

* 작전경과보고서 1~11권

다. 화기 및 장비 피해

구 분	단 위	계	해 군	해 병
60 밀 리 박 격 포	문	3	-	3
야 포	문	1	-	1
로 켓 포	문	2	-	2
중 기 관 총	정	4	1	3
경 기 관 총	정	11	-	11
자 동 소 총	정	29	-	29
권 총	정	15	2	13
카 빈 소 총	정	85	4	81
M1 소 총	정	96	-	96
전 차	대	2	-	2
차 량	대	5	-	5
통 신 기	대	2	1	1
방 카 파 괴	개	20	-	20
VP 침 물	정	1	-	1
화 염 방 사 기	대	2	-	2
전 화 기	대	5	-	5
철 모	개	73	-	73
헬 멧	개	63	-	63
기 관 총	정	15	2	13

* 해군사(작전편), 해군본부, 1958, 부록 4

第 4 節 空 軍

1. 概 要

경비행기(L-형 및 T-6) 22대와 병력 1,800여 명의 전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공군은 1950년 7월 2일 미 공군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하여 전투작전임무를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전력확장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951년 8월 1일에는 제1전투비행단을 창설하여 동년 11월 10일부터 유엔공군의 한 전투단위부대로서 한국공군의 독자적인 단독출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성장하였다. 휴전 당시에는 2개 전투비행단과 1개 훈련비행단으로 F-51 전투기 80대를 포함한 118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병력도 13,000여 명 수준으로 증강되었다.

그러나 피해도 조종사 27명을 포함한 114명의 전사자와 F-51 전투기 65대를 포함한 130대의 항공기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하 각종 통계는 공군본부의 한국전쟁 피해통계 자료보고서(1996. 1. 17, 국방부)를 주로 참조하였다.

○ 보충병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13,446	1,358	3,173	4,722	4,193
장 교	1,612	159	561	164	728
사 병	11,834	1,199	2,612	4,558	3,465
비 고	사관생도(690명)는 제외하였음.				

* 공군사 제1집 증보판, 공군본부, 1991, p. 271

2. 人的 被害

가. 전투 손실(전사자)

단위 : 명

구분	계 급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114	72	25	8	9
장 교	소 장	1	1	-	-	-
	준 장	1	1	-	-	-
	대 령	1	1	-	-	-
	중 령	-	-	-	-	-
	소 령	5	1	3	1	-
	대 위	11	3	3	1	4
	중 위	6	2	-	3	1
	소 위	6	6	-	-	-
	계	31	15	6	5	5
사 병	일 등 상사	6	4	-	-	2
	이 등 상사	5	4	-	1	-
	일 등 중사	2	1	1	-	-
	이 등 중사	13	11	2	-	-
	하 사	18	14	4	-	-
	일 병	13	11	2	-	-
	이 병	24	12	10	-	2
	계	81	57	19	1	4
군 무 원		2	-	-	2	-

* 공군본부 전사자 명부

나. 비전투 손실(순직자)

단위 : 명

구분	계 급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24	1	5	10	8
장 교	소 령	1	-	-	1	-
	대 위	3	-	1	1	1
	중 위	4	-	-	2	2
	소 위	3	-	-	2	1
	소 계	11	-	1	6	4
사 병	일 등 상사	4	-	1	2	1
	이 등 상사	-	-	-	-	-
	일 등 중사	1	-	1	-	-
	이 등 중사	3	-	-	1	2
	하 사	3	1	1	-	1
	일 병	2	-	1	1	-
	이 병	-	-	-	-	-
	소 계	13	1	4	4	4

* 공군본부 순직자 명부

3. 物的 被害

가. 항공기 피해대수(1950. 6. 25~53. 7. 27)

단위 : 대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130	28	23	44	35
대 파	89	19	14	26	30
파 괴	41	9	9	18	5

* 항공기 사고통람, 공군본부 감찰감실, 1973, pp. 31~37

나. 항공기별 피해

단위 : 대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130	28	23	44	35
L-4	23	15	5	2	1
L-5	18	7	5	3	3
L-16	2	-	1	1	-
L-19	2	-	-	2	-
T-6	20	3	2	7	8
F-51	65	3	10	29	23



꺾터미로 변한 廢墟 위에
홀로 살아남은 少年

第3章 警察 및 民間人の被害

第1節 警 察

1. 概 要

광복후 미군에 의하여 점령지 통치수단으로서 편성된 경찰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후 독립국가의 경찰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내무부에 치안국이 설치되어 전국의 경찰조직을 운영하였다.

당시의 경찰은 오늘날에 비하여 전투수행을 비롯한 훨씬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경찰의 모든 활동과 임무는 대공문제의 중시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으니, 많은 군사적 전투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남침공비를 토벌해야 하였고 폭동을 진압함은 물론 38도선을 경비해야만 하였다. 경찰은 국가보위뿐만 아니라 자체방위를 위해서도 물리적 힘(무력)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전투행위를 위한 상설기구는 없었다.

한편, 전국 철도시설을 무대로 한 각종사고와 범죄의 증가로 혼란이 야기되어, 일반경찰과 분리된 특수경찰로서 운수부 소속으로 철도경찰이 설치되어 철도 및 열차 내에서의 범죄사고의 미연방지과 단속 및 불순분자 적발 기타 중요임무를 관장 수행하여 다

대한 성과를 거두어 오다가 경찰행정의 통합과 기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경찰에 편입되었다. 광복 직후의 혼란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즈음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장 발전하여 오던 경찰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군과 합동으로 접적지역에서 북한군의 침략저지에 나서게 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들의 남진에 대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리하여 접적지역인 개성, 문산, 춘천 그리고 강릉지구에서 국군과 더불어 북한군의 저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철수중에도 군의 지연작전에 참가하여 군 주요보급로 경비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 시기에는 15,000여 명의 경찰이 유엔군에 배속되어 게릴라 소탕과 아울러 소규모의 전투를 군과 수행하였으며, 반격작전 시기에는 수복지구의 치안확보와 잔비소탕 그리고 철도 및 주요보급로 경비 등을 맡아 전투임무도 수행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북한지역에서의 철수로부터 현 휴전선 부근에서 고지쟁탈전으로 일진일퇴하면서 휴전을 맞이할 때까지는 전선을 군에 일임하고 전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재산(在山) 공비의 준동지역 위주로 섬멸작전을 전개하는 한편, 군의 작전명령에 따라 영·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등 수많은 군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각 시·도 경찰국 단위로도 지역 내에 준동하는 게릴라 및 공비섬멸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국군부대 못지않은 제반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 피해도 적지 않아, 전사상자 11,000여 명과 납치/실종 8,000여 명이 발생하였고 많은 장비 및 물자의 손실이 있었다. 이

하 각종 통계는 내무부 치안국(현 경찰청)의 한국경찰사 제2집 (1973년판)을 주로 참조하였다.

2. 人的被害

가. 피해현황 종합(1950. 6~53. 12)

단위 : 명

구 분		계	1950	1951	1952	1953
총 계		19,034	10,977	6,111	1,267	679
경찰관	합 계	17,378	10,977	4,937	1,026	438
	전 사	3,131	1,067	1,388	467	209
	부 상	6,760	3,364	2,729	474	193
	납 치	403	52	302	42	7
	실 종	7,084	6,494	518	43	29
청년단	합 계	1,656	-	1,174	241	241
	전 사	628	-	358	135	135
	부 상	672	-	507	72	93
	납 치	134	-	105	19	10
	실 종	222	-	204	15	3

나. 연도별 피해현황

(1) 1950년도 현황(1950. 6~12)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부 상	납 치	실 종
총 계	10,977	1,067	3,364	52	6,494
1950. 6~ 9.	9,223	598	2,354	-	6,271
1950. 10~12.	1,754	469	1,010	52	223

* 1950. 10~12. 기간의 현황은 경찰과 의경의 합산이며, 1951년 1~4 월의 중복치를 조정(제외)한 것임

(가) 기간 중 현황(1950. 6. 25~9. 30)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부 상	납 치	실 종
총 계	9,223	598	2,354	-	6,271
서 울	1,041	58	198	-	785
경 기	1,517	123	288	-	1,106
강 원	1,320	68	875	-	377
충 북	342	69	161	-	112
충 남	1,387	56	100	-	1,231
경 북	342	61	206	-	75
경 남	193	65	105	-	23
전 북	2,196	38	158	-	2,000
전 남	230	36	164	-	30
제 주	17	5	12	-	-
철 도	638	19	87	-	532

(나) 기간 중 현황(1950. 10. 1~12)

단위 : 명

구 분	1950. 10~12.	1950. 10~51. 4.	1951. 1~4.
총 계	1,754	3,224	1,470
전 사	469	834	365
부 상	1,010	1,825	815
납 치	52	83	31
실 종	223	482	259
비 고	‘가’-‘나’	‘가’	‘나’

* 관계문헌자료에는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피해통계현황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표에서와 같이 중복된 기간(‘가’와 ‘나’의 4개월분 : 다음 면의 1951년도 현황 참조)의 수치를 차감한 것임

○ 중복기간 중 현황(1950. 10~51. 4)

단위 : 명

구 분	계	경 찰	의 경
총 계	3,224	3,030	194
전 사	834	771	63
부 상	1,825	1,748	77
납 치	83	34	49
실 종	482	477	5

(2) 1951년도 현황(1951. 1~12)

경찰/청년단,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부 상	납 치	실 증
총 계	6,111	1,746	3,236	407	722
경 찰 계	4,937	1,388	2,729	302	518
청년단계	1,174	358	507	105	204
1 월	398/94	115/13	202/55	3/22	78/4
2 월	437/59	62/19	258/34	-/-	117/6
3 월	380/167	102/61	214/88	-/15	64/3
4 월	255/74	86/26	141/21	28/24	-/3
1~4월 계	1,470/394	365/119	815/198	31/61	259/16
5 월	145/59	41/18	100/41	-/-	4/-
6 월	188/165	59/73	123/70	3/16	3/6
7 월	582/73	180/36	380/36	16/-	6/1
8 월	729/138	167/44	305/17	175/16	82/61
9 월	861/287	270/46	489/113	1/9	101/119
10 월	518/13	153/4	283/8	38/1	44/-
11 월	297/26	98/11	150/14	30/1	19/-
12 월	147/19	55/7	84/10	8/1	-/1

* 도표의 '1~4월 계'는 1950년 10월~12월 기간의 통계현황을 산출하기 위한 것임

(3) 1952년도 현황(1952. 1~12)

경찰/청년단,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부 상	납 치	실 종
총 계	1,267	602	546	61	58
경 찰 계	1,026	467	474	42	43
청년단계	241	135	72	19	15
서 울	-/-	-/-	-/-	-/-	-/-
경 기	6/-	1/-	5/-	-/-	-/-
강 원	14/45	2/31	12/7	-/7	-/-
충 북	13/4	6/1	7/3	-/-	-/-
충 남	1/1	1/1	-/-	-/-	-/-
경 북	56/19	15/4	32/15	2/-	7/-
경 남	93/63	40/39	40/21	6/-	7/3
전 북	316/52	160/22	128/11	17/9	11/10
전 남	342/39	156/23	163/11	8/3	15/2
제 주	60/12	26/9	29/3	5/-	-/-
철 도	15/2	9/2	6/-	-/-	-/-
지 전 사	51/4	30/3	21/1	-/-	-/-
태 전 사	59/-	21/-	31/-	4/-	3/-

* 지전사는 智異山地區戰鬪警察司令部, 태전사는 太白山地區戰鬪警察司令部的 약자임

(4) 1953년도 현황(1953. 1~12)

경찰/청년단,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부 상	납 치	실 종
총 계	679	344	286	17	32
경 찰 계	438	209	193	7	29
청년단계	241	135	93	10	3
서 울	-/-	-/-	-/-	-/-	-/-
경 기	-/-	-/-	-/-	-/-	-/-
강 원	6/12	4/3	2/9	-/-	-/-
충 북	2/2	1/1	1/1	-/-	-/-
충 남	-/-	-/-	-/-	-/-	-/-
경 북	8/10	6/6	1/4	1/-	-/-
경 남	84/34	34/14	26/16	2/3	22/1
전 북	82/50	43/31	33/16	1/2	5/1
전 남	131/12	53/7	77/4	1/-	-/1
서 남	122/115	66/69	52/41	2/5	2/-
제 주	3/6	2/4	1/2	-/-	-/-
칠 도	-/-	-/-	-/-	-/-	-/-

3. 物的 被害

가. 화기피해 종합(1950. 6~53. 12)

단위 : 정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총 계	3,793	3,680	113
1950	1,730	1,718	12
1951	1,199	1,114	85
1952	394	388	6
1953	470	460	10

* 1953년 현황은 12월분까지 포함되었음

(1) 1950년도 현황(1950. 6~12)

단위 : 정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총 계	1,730	1,718	12
1950. 6~ 9.	1,570	1,559	11
1950. 10~12.	160	159	1

* 1950. 10~12. 기간의 현황은 1951년 1~4월의 중복치를 조정(제외)한 것임

(가) 기간 중 현황(1950. 6. 25~9. 30)

단위 : 정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총 계	1,570	1,559	11
서 울	5	5	-
경 기	144	144	-
강 원	270	267	3
충 북	245	244	1
충 남	58	58	-
경 북	123	123	-
경 남	22	22	-
전 북	30	30	-
전 남	631	624	7
제 주	2	2	-
철 도	40	40	-

(나) 기간 중 현황(1950. 10~12)

단위 : 정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비 고
1950. 10~12.	160	159	1	‘가’-‘나’
1950. 10~1951. 4.	263	255	8	‘가’
1951. 1~4.	103	96	7	‘나’

○ 중복기간 중 현황(1950. 10. 1~51. 4)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총 계	263	255	8
서 울	-	-	-
경 기	9	9	-
강 원	-	-	-
충 북	-	-	-
충 남	-	-	-
경 북	11	8	3
경 남	52	52	-
전 북	77	75	2
전 남	78	75	3
제 주	14	14	-
철 도	-	-	-
태 전 사	22	22	-
지 전 사	-	-	-

(2) 1951년도 현황(1951. 1~12)

단위 : 정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총 계	1,199	1,114	85
1 월	10	10	-
2 월	11	5	6
3 월	71	70	1
4 월	11	11	-
1~4월 계	103	96	7
5 월	4	4	-
6 월	46	42	4
7 월	169	158	11
8 월	256	237	19
9 월	385	360	25
10 월	138	124	14
11 월	70	66	4
12 월	28	27	1

* 도표의 '1~4월 계'는 1950년의 10~12월 기간의 통계현황을 산출하기 위한 것임

(3) 1952년도 현황(1952. 1~12)

단위: 정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총 계	394	388	6
1 월	17	14	3
2 월	39	39	-
3 월	11	11	-
4 월	25	25	-
5 월	58	56	2
6 월	47	46	1
7 월	34	34	-
8 월	29	29	-
9 월	42	42	-
10 월	24	24	-
11 월	33	33	-
12 월	35	35	-

(4) 1953년도 현황(1953. 1~12)

단위: 정

구 분	계	소 화 기 류	중 화 기 류
총 계	470	460	10
서 울	-	-	-
경 기	-	-	-
강 원	1	1	-
충 북	2	2	-
충 남	-	-	-
경 북	6	6	-
경 남	73	72	1
전 북	52	51	1
전 남	101	101	-
서 남	231	223	8
제 주	4	4	-
철 도	-	-	-

나. 통신시설 피해

(1) 유선시설

구 분	시설규모(km)	파괴규모(km)	비 율(%)
총 계	21,958	13,913	63
치안국 간선	250	250	100
서 울	309	309	100
경 기	3,240	2,518	78
강 원	2,664	2,246	85
충 북	1,718	1,044	60
충 남	3,437	2,810	82
경 북	2,796	1,389	50
경 남	1,915	470	25
전 북	2,700	1,294	48
전 남	2,929	1,583	55

* 교환기(119대), 전화기(6,481대) 제외되었음

(2) 무선시설

구 분	기존시설	파괴시설	비 율(%)
시 설 개 소	234	200	85
송 신 기	556	505	91
수 신 기	345	291	84
축 전 기	43	41	91

第 2 節 民 間 人

1. 概 要

1945년 8월 15일 일본(日本)의 무조건 항복으로 맞이한 해방은 환희의 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한반도에 후유증을 가져왔는데, 이는 38도선을 경계로 한 가운데 사회의 혼미와 정국의 불확실성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북한(北韓)에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남한(南韓)에는 유엔이 공식 승인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수립되어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민족의 분단 그 자체가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이미 한국전쟁의 가능성을 잉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3년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한국전쟁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군인 및 경찰을 제외한 민간인의 피해를 다루었는데, 그 피해의 대부분은 전쟁발발 이후 철수와 반격이 반복되던 전쟁 초기에 발생하였으며,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는 일부 후방지역에서 적의 게릴라 및 잔비(殘匪)들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겠다. 이하 각종통계는 내무부 통계국(당시)의 제2회 대한민국 통계연감(1955년판)을 주로 참조하였다.

참고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남한의 총 인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남한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1949. 5. 현재 (가)	1952. 3. 현재 (나)	1953. 말 현재 (다)	1955. 9. 현재 (라)
총 계	20,166,756	20,526,705	21,546,248	21,502,386
서 울	1,437,670	676,221	1,010,416	1,568,746
경 기	2,733,944	2,800,014	2,499,576	2,359,558
충 북	1,145,964	1,319,164	1,374,205	1,191,268
충 남	2,026,837	2,189,878	2,378,206	2,220,895
전 북	2,048,951	2,249,184	2,286,873	2,124,521
전 남	3,041,491	2,849,417	3,202,492	3,126,377
경 북	3,205,240	3,514,445	3,521,671	3,361,346
경 남	3,133,697	3,661,570	3,678,800	3,765,119
강 원	1,138,435	1,000,393	1,302,125	1,495,755
제 주	254,527	266,419	291,884	288,801

* (가), (나) : 대한민국 통계연감, 공보처 통계국, 1952, p. 25

(다) : 대한민국 통계연감, 내무부 통계국, 1954, p. 14

(라) : 대한민국 통계연감, 내무부 통계국, 1957, p. 22

2. 人的 被害

가. 피난민 현황

(1) 시·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51. 3. 현재 (가)	1951. 5. 현재 (나)	1953. 4. 현재 (다)
총 계	6,514,582	5,758,435	2,611,328
서 울	128,400	-	40,219
경 기	1,729,516	1,661,312	804,030
충 북	700,300	270,051	156,713
충 남	760,477	802,572	275,932
전 북	329,032	414,103	326,331
전 남	523,125	577,737	156,929
경 북	1,383,208	575,292	229,089
경 남	558,496	521,414	440,415
강 원	330,800	987,160	161,311
제 주	71,228	148,794	20,359

* (가) : 한국전란 1년지, 국방부, 1951, p. D35

(나) : 한국전란 1년지, 국방부, 1951, p. D37

(다) : 한국전란 3년지, 국방부, 1954, p. D6

(2) 전재민(戰災民) 종합현황(1950. 6. 25~52. 3. 15)

(한국전란 2년지, 국방부, 1953, p. D21)

단위 : 명

구 분	세 대 수	인 원	비 고
총 계	2,104,661	10,189,301	
남 한 피 난 민	421,228	1,714,992	시·도별 : 별표 '1'
월 남 피 난 민	135,745	618,721	도 별 : 별표 '2'
전 재 민 (가)	656,949	3,419,996	
원 주 빈 민 (나)	890,739	4,375,413	
전 재 고 아 (다)	-	48,322	
기 타 (라)	-	11,857	

- * (가) 전재민은 직접 전화를 입은 남한의 민간인임
 (나) 원주빈민(原住貧民)은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임
 (다) 전재고아(戰災孤兒)는 당시 공·사립 수용소에 수용보호중인 자임
 (라) 기타는 전국 각지의 부랑아 및 절인(乞人)임

〔별표 1〕 남한의 시·도별(출신지별) 피난민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세 대 수	인 원
서 울 특 별 시	188,476	895,126
경 기 도	118,314	263,003
충 청 북 도	10,497	49,491
충 청 남 도	9,620	44,002
경 상 북 도	9,527	44,510
경 상 남 도	11,627	54,414
전 라 북 도	22,346	119,312
전 라 남 도	15,230	74,300
강 원 도	34,750	167,321
제 주 도	841	3,513

〔별표 2〕 북한의 도별 피난민 현황

단위 : 명

구 분	세 대 수	인 원
이 북 경 기 도	12,758	59,309
이 북 강 원 도	39,735	191,132
황 해 도	27,554	122,468
평 안 남 도	20,602	89,607
평 안 북 도	7,296	31,657
함 경 남 도	24,746	111,860
함 경 북 도	3,054	12,688

나. 인명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대한민국 통계연감, 내무부 통계국, 1955, pp. 212~213)

(1) 시·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 망	학 살	부 상	납 치	행 불
총 계	990,968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서 울	129,908	29,628	8,800	34,680	20,738	36,062
경 기	128,740	39,728	7,511	25,479	16,057	39,965
충 북	70,003	24,320	3,409	12,658	6,312	23,304
충 남	75,409	23,707	5,561	20,290	10,022	15,829
전 북	91,861	40,462	14,216	15,364	7,210	14,609
전 남	193,788	14,193	69,787	52,168	4,171	53,469
경 북	97,851	35,485	6,609	21,061	7,584	27,112
경 남	72,306	19,963	6,099	32,417	1,841	11,986
강 원	130,777	17,122	6,825	15,483	10,528	80,819
제 주	325	55	119	25	69	57

(2) 남·녀별 피해현황

단위 : 명

시 도 별	구 분	계	사 망	학 살
총 계	남 자	764,281	166,104	97,680
	여 자	226,687	78,559	31,256
서 울	남 자	92,483	17,117	6,868
	여 자	37,425	12,511	1,932
경 기	남 자	95,649	22,893	6,424
	여 자	33,091	16,835	1,087
충 북	남 자	63,097	20,201	3,074
	여 자	6,906	4,119	335
충 남	남 자	66,933	19,810	4,898
	여 자	8,476	3,897	663
전 북	남 자	67,270	26,668	10,565
	여 자	24,591	13,794	3,651
전 남	남 자	136,513	8,753	49,851
	여 자	54,275	5,440	19,936
경 북	남 자	80,283	26,903	5,422
	여 자	17,568	8,582	1,187
경 남	남 자	52,556	12,967	5,020
	여 자	19,750	6,996	1,079
강 원	남 자	106,256	10,741	5,462
	여 자	24,521	6,381	1,363
제 주	남 자	241	51	96
	여 자	84	4	23

* 계 : 다음 면의 부상, 납치 및 행불현황 포함

시 도 별	구 분	부 상	납 치	행 불
총 계	남 자	168,849	78,377	253,271
	여 자	60,776	6,155	49,941
서 울	남 자	21,716	19,003	27,779
	여 자	12,964	1,735	8,283
경 기	남 자	16,855	15,491	33,986
	여 자	8,624	566	5,979
충 북	남 자	11,905	5,979	21,938
	여 자	753	333	1,366
충 남	남 자	17,356	9,995	14,874
	여 자	2,934	27	955
전 북	남 자	12,452	6,220	11,365
	여 자	2,912	990	3,244
전 남	남 자	37,911	3,104	39,894
	여 자	14,257	1,067	13,575
경 북	남 자	16,690	7,196	24,072
	여 자	4,371	388	3,040
경 남	남 자	23,661	1,641	9,267
	여 자	8,756	200	2,719
강 원	남 자	10,281	9,721	70,051
	여 자	5,202	807	10,768
제 주	남 자	22	27	45
	여 자	3	42	12

3. 物的 被害

가. 가족 피해(1950. 6. 25~53. 7. 27)

단위 : 마리

구분	소	젖소	말	돼지	토끼	닭	산양	면양	기타
총 계	198,889	727	3,830	359,590	85,449	2,083,580	16,739	1,098	178,278
서 울	317	241	566	3,375	1,698	48,972	58	11	1,427
경 기	34,370	140	390	49,890	24,102	518,413	376	173	5,427
충 북	13,753	24	45	40,157	4,878	110,966	4,255	102	42,231
충 남	8,821	42	456	26,427	18,929	211,780	2,256	74	41,375
전 북	20,590	16	1,001	66,084	16,560	312,357	3,115	26	41,320
전 남	7,482	58	327	13,527	1,495	100,757	475	29	6,067
경 북	40,830	31	462	90,246	7,688	437,666	4,389	167	20,146
경 남	23,613	21	79	38,947	6,140	184,999	1,502	395	12,471
강 원	48,892	154	55	30,937	3,959	157,670	313	121	7,814
제 주	221	-	449	-	-	-	-	-	-

○ 양봉(養蜂) 피해

단위 : 상자

계	서 울	경 기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강 원	제 주
49,670	890	11,280	2,352	1,462	6,241	3,685	4,030	7,684	11,976	70

나. 주택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구 분	피해액(단위 : 千圓)				동수(棟)	연건평(坪)
	총 액	건 물	동 산	기 타		
총 계	161,310,566	79,364,174	56,490,506	25,455,886	612,636	11,911,855
서 울	67,270,345	42,394,655	17,632,129	7,263,561	48,543	904,878
경 기	20,372,286	10,086,829	7,401,300	2,884,157	96,920	5,184,363
충 북	6,457,225	2,499,899	2,587,180	1,370,146	38,955	561,432
충 남	3,238,173	1,718,198	1,263,967	256,008	12,950	229,485
전 북	5,951,426	3,125,690	2,138,596	687,140	46,386	571,080
전 남	7,393,747	4,377,818	2,253,046	762,883	64,997	1,138,830
경 북	10,137,651	5,115,747	3,047,947	1,973,957	122,314	1,082,251
경 남	35,538,822	7,818,751	18,544,917	9,175,154	135,267	1,530,687
강 원	4,930,891	2,226,587	1,621,424	1,082,880	46,304	708,849
제 주	-	-	-	-	-	-

* ① 동산 : 가구 등

② 기타 : 상품, 물자 등

다. 중앙청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구	분	동 수(棟)	연 건 평(坪)
총	계	135	46,858
총	무 처	11	14,435
공	보 처	5	1,500
법	제 처	-	-
기	획 처	-	-
내	무 부	8	-
외	무 부	-	-
국	방 부	1	4,349
재	무 부	-	-
법	무 부	3	606
문	교 부	-	-
농	림 부	2	400
상	공 부	2	550
사	회 부	8	583
보	건 부	-	-
교	통 부	7	11,968
체	신 부	68	9,800
심	계 원	1	16
관	재 청	1	602
전	매 청	3	1,227
구왕실재산관리위원회		12	422
민	의 원	-	-
대	법 원	3	400

라. 각 부처 직속기관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구	분	기 관 수	등 수(棟)	연 건 평(坪)
총	계	527	4,967	973,058
총	무 처	22	22	2,236
공	보 처	9	33	2,321
내	무 부	9	40	1,777
국	방 부	114	1,785	20,209
재	무 부	7	78	9,369
법	무 부	26	750	36,502
문	교 부	18	82	9,282
농	림 부	129	642	19,665
상	공 부	27	185	5,193
사	회 부	3	42	1,532
보	건 부	14	47	2,569
교	통 부	...	...	599,384
체	신 부	32	955	50,083
외	자 관 리 청	3	6	402
전	매 청	18	114	202,107
대	법 원	43	134	7,840
구왕실재산관리위원회		4	2	427
관	재 청	49	50	2,160

마. 지방청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평

구 분	시·도 본청		시 청		구·군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수	연건평	동수	연건평	동수	연건평	동수	연건평	동수	연건평
총 계	31	6,682	307	9,350	288	13,527	656	25,998	1,703	72,008
서 울	2	350	-	-	18	143	-	-	-	-
경 기	6	1,622	19	1,589	66	2,827	570	14,330	-	-
충 북	1	615	9	740	23	1,537	21	547	224	4,311
충 남	1	60	6	400	15	1,161	22	541	86	2,005
전 북	16	2,535	188	3,215	15	710	2	40	327	8,610
전 남	-	-	13	392	69	1,704	19	8,500	383	25,094
경 북	-	-	5	477	31	1,331	10	1,180	174	9,865
경 남	-	-	2	400	29	1,750	6	260	290	10,275
강 원	5	1,500	65	2,137	22	2,364	6	600	219	11,848
제 주	-	-	-	-	-	-	-	-	-	-

* 경기도 : 읍사무소에 면사무소 포함

바. 지방청 직속기관 및 학교 피해현황

(1950. 6. 25~53. 7. 27)

단위 : 평

구 분	지 방 청 직 속 기 간			각 급 학 교		
	기 관 수	동 수	연 건 평	학 교 수	동 수	연 건 평
총 계	200	564	21,214	4,023	15,427	1,278,242
서 울	43	126	6,350	202	1,025	583,530
경 기	26	92	2,323	601	1,839	116,808
충 북	21	46	2,835	274	2,354	87,265
충 남	14	44	1,368	407	1,524	85,551
전 북	12	94	1,650	263	627	51,384
전 남	40	79	3,715	417	1,171	71,031
경 북	20	37	1,385	1,030	4,852	151,278
경 남	9	19	762	441	1,057	68,488
강 원	15	27	826	373	967	62,637
제 주	-	-	-	15	11	270

사. 경찰관서 및 세무서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평

구 분	경 찰 관 서			세 무 서		
	관서수	동 수	연건평	기관수	동 수	연건평
총 계	1,176	1,931	66,471	51	129	4,211
서 울	60	91	5,651	4	7	129
경 기	202	316	8,573	10	29	905
충 북	79	281	1,710	3	2	75
충 남	60	35	1,141	3	6	139
전 북	127	245	6,836	4	10	329
전 남	226	395	18,119	10	18	955
경 북	140	193	12,200	7	26	773
경 남	131	155	4,743	4	8	417
강 원	151	220	7,498	6	23	489
제 주	-	-	-	-	-	-

* 경찰관서 : 지서, 파출소, 출장소 및 수상서(水上署) 포함

아.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평

구 분	금 융 기 관			의 료 기 관		
	기관수	동 수	연건평	기관수	동 수	연건평
총 계	443	1,115	48,008	940	1,132	66,950
서 울	59	83	12,395	294	275	16,193
경 기	72	214	8,303	16	34	2,960
충 북	47	78	2,005	137	235	15,601
충 남	48	84	2,502	87	86	3,506
전 북	31	80	3,393	55	75	2,478
전 남	59	96	4,049	75	47	10,107
경 북	31	252	6,260	137	191	6,579
경 남	56	81	2,424	70	99	2,150
강 원	40	147	6,677	69	90	7,376
제 주	-	-	-	-	-	-

* 금피 피해량 : 273,968(g)

자. 기업체, 각종 단체 및 공영건물 피해현황

(1950. 6. 25~53. 7. 27)

단위 : 평

구분	기업체			각종 단체			공영건물		
	단체수	동 수	연건평	단체수	동 수	연건평	단체수	동 수	연건평
총 계	10,436	17,051	787,206	1,165	2,104	102,523	542	583	33,918
서울	1,289	1,804	249,223	107	125	5,732	94	92	2,679
경기	1,184	2,126	144,687	313	575	24,711	103	115	2,999
충북	1,751	3,053	72,944	54	87	4,821	-	-	-
충남	1,698	1,731	67,795	34	49	2,493	2	3	65
전북	266	437	18,784	69	104	4,729	34	35	931
전남	789	968	45,227	189	581	30,829	34	33	20,952
경북	1,572	3,684	81,541	146	195	9,039	-	-	-
경남	1,709	2,635	52,967	103	179	9,414	180	196	2,463
강원	177	610	53,964	150	209	10,755	95	109	3,829
제주	1	3	74	-	-	-	-	-	-

차. 각 공업별 피해현황(1952. 4.말 현재)

(한국전란 2년지, 국방부, 1953, p. D19)

구 분	전쟁전 공장수	피해 공장수
총 계	3,707	914
면 방 직 공 업	15	12
모 방 직 공 업	11	2
견 인 견 직 공 업	530	96
메 리 야 스 공 업	361	103
염 색 공 업	25	15
연 사 공 업	85	21
타 - 올 공 업	4	3
기 타 섬 유 공 업	62	-
고 무 공 업	215	18
피 혁 공 업	101	12
제 지 공 업	23	13
인 쇄 공 업	120	28
유 기 화 학 공 업	227	40
무 기 화 학 공 업	112	26
요 업 공 업	301	53
식 료 품 공 업	156	48
금 속 공 업	605	238
기 계 공 업	754	186

카. 도로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m

구 분	계		국 도		지 방 도	
	개 소	피해연장	개 소	피해연장	개 소	피해연장
총 계	3,109	548,636	1,119	210,326	1,990	338,310
서 울	228	165,251	28	67,578	200	97,673
경 기	407	40,070	188	25,783	219	14,287
충 북	91	21,046	34	10,498	57	10,548
충 남	114	8,416	58	3,393	56	5,023
전 북	335	61,662	171	8,513	164	53,149
전 남	687	136,209	151	37,532	536	98,677
경 북	293	6,646	149	3,845	144	2,801
경 남	726	34,560	213	15,034	513	19,526
강 원	228	74,776	127	38,150	101	36,626
제 주	-	-	-	-	-	-

타. 철도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m

구 분	선 로	교 량	수 도	전 선
총 계	329,480	9,315	4,935	60,766
경 부 선	140,780	3,207	560	8,758
경 인 선	2,780	66	-	762
경 원 선	15,628	184	-	27,360
경 의 선	22,969	976	450	3,713
중 앙 선	89,153	1,795	3,744	5,587
경 춘 선	15,900	565	-	433
토 해 선	-	-	-	274
용 산 선	1,640	-	-	20
수 인 선	613	13	-	168
수 려 선	710	10	-	234
경 기 선	2,030	13	-	123
충 남 선	803	446	-	537
충 북 선	9,901	407	20	312

* 수도(隧道) : 굴(터널)

구 분	선 로	교 량	수 도	전 선
호 남 선	8,642	502	-	4,474
경 북 선	730	290	100	234
대 구 선	40	40	-	8
경전서부선	2,508	118	59	3,294
경전남부선	2,081	71	-	237
전 라 선	8,828	356	2	3,662
동해남부선	1,304	44	-	189
영 압 선	50	50	-	18
철 압 선	1,608	80	-	65
삼 척 선	782	82	-	-
군 산 선	-	-	-	204
화 순 선	-	-	-	87
영 월 선	-	-	-	13

파. 항만시설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1) 시·도별 현황

단위 : 평

구 분	피해항만수	동 수	연 건 평
총 계	15	111	13,137
서 울	-	-	-
경 기	1	50	6,000
충 북	-	-	-
충 남	1	3	1,940
전 북	2	6	933
전 남	2	1	1,200
경 북	2	11	486
경 남	5	30	1,320
강 원	2	10	1,258
제 주	-	-	-

(2) 항구별 피해현황

항 구 명	중 요 피 해 상 황
인 천 항	물양장 및 호안 350m, 갑문비 4매, 교량 3기, 상옥급 창고 18,262㎡, 공사용 선박 17척, 기중기 2대
군 산 항	부잔교 및 고정잔교 5기, 물양장 및 호안 670m, 상옥급 건물 8,715㎡, 공사용 선박 16척
목 포 항	잔교 5기, 물양장 및 호안 300m, 건물 594㎡, 공사용 선박 12척
여 수 항	물양장 775m, 방충재 519m, 건물 5,643㎡, 공사용 선박 10척
포 항 항	창고 726㎡, 공사용 선박 12척
묵 호 항	창고 700㎡, 공사용 선박 14척
삼 척 항 (정라항)	건물 495㎡, 공사용 선박 5척
지 방 항	물양장 및 호안 6,830m, 잔교 12기, 돌제 700m, 상옥 2동, 갑문 1개소

하. 수도시설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km

구 분	피해개소	계	수원시설	수관시설	급수시설	기 타
총 계	39,849	136,021	4,141	30,163	34,557	67,160
서 울	20,260	1,350	-	1,350	-	-
경 기	5,520	2,880	-	2,880	-	-
충 북	5,571	-	-	-	-	-
충 남	3,598	103,645	105	14,540	21,900	67,100
전 북	941	7,753	3,206	1,847	2,700	-
전 남	1,047	6,719	830	3,732	2,157	-
경 북	6	4,230	-	2,430	1,800	-
경 남	1,765	6,444	-	2,384	4,000	60
강 원	1,141	3,000	-	1,000	2,000	-
제 주	-	-	-	-	-	-

거. 사방시설 피해현황(1950. 6. 25~53. 7. 27)

단위 : 평(면적), m(연장)

구 분	계			산 지 보 수			산 지 보 식		
	개 소	면 적	연 장	개 소	면 적	연 장	개 소	면 적	연 장
총 계	4,020	1,176,948	228,645	1,922	243,150	-	1,597	917,998	-
서 울	16	777,519	2,700	5	-	-	7	777,519	-
경 기	597	15,393	61,120	533	15,393	-	-	-	-
충 북	592	9,929	28,443	320	1,792	-	244	8,137	-
충 남	392	17,780	20,710	191	6,114	-	189	11,675	-
전 북	459	15,240	37,844	367	15,240	-	-	-	-
전 남	239	290,145	8,710	86	182,445	-	53	95,700	-
경 북	1,230	29,450	58,600	330	7,500	-	750	21,650	-
경 남	363	611	325	7	50	-	332	561	-
강 원	132	20,872	10,193	83	14,616	-	22	2,756	-
제 주	-	-	-	-	-	-	-	-	-

* 계 : 다음 면의 야계보수(野溪補修) 및 기타현황 포함

구 분	아 계 보 수			기 타		
	개 소	면 적	연 장	개 소	면 적	연 장
총 계	451	-	228,620	50	15,800	25
서 울	4	-	2,700	-	-	-
경 기	64	-	61,120	-	-	-
충 북	28	-	28,443	-	-	-
충 남	12	-	20,710	-	-	-
전 북	92	-	37,844	-	-	-
전 남	89	-	8,710	11	12,000	-
경 북	120	-	58,600	30	300	-
경 남	22	-	300	2	-	25
강 원	20	-	10,193	7	3,500	-
제 주	-	-	-	-	-	-



2,293 勇士의 遺骸가 잠들어 있는
유엔 墓地 全景(釜山)

第4章 유엔 參戰國의 被害

第1節 概 說

북한군(北韓軍)의 불법남침으로 한반도(韓半島)에 불안하게 유지되어 온 평화가 파괴되자 미국(美國)과 유엔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였다.

북한의 남침소식은 주한(駐韓) 외교사절이나 특파원들에 의해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미국으로는 전쟁발발 5시간 후인 25일 09:30(현지시간은 24일 20:30)경에 전달되었고 주한 미 대사의 보고서는 약 1시간 후에 국무부에 도착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개성 피탈 상황까지 포함하여 “북한의 공격은 그 양상으로 보아 한국에 대한 전면공격에 틀림없을 것 같다.”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 사태를 유엔에 제기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는 한편,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다. 또한 서울 주재 유엔한국위원단도 이 날 회의를 갖고 대응방책을 논의후 21:00에는 중앙방송을 통하여 “북한군은 즉각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38도선으로 철수한 다음 평화회의를 통하여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미 극동군사령부도 주한 미 대사관 무관 및 연락장교단으

로부터 남침보고를 받고 한국으로의 탄약수송을 촉진하면서 예비조치로 제7함대의 한국해역으로의 이동을 미 육군성에 건의하였다.

6월 26일, 미국의 공식요청으로 개최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에 적대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각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북한군이 '6·26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계속하자, 미국은 다음 단계의 대응조치로서 미 해·공군에 가해진 제한사항(한국에 대한 탄약지원과 자국민의 철수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의 해·공군 운용)을 해제하여 38도선 이남에 위치한 모든 북한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작전을 시행하였다.

미국은 해·공군의 참전을 결정하면서 비록 이 조치가 '6·26 유엔 결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얻음과 동시에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다른 회원국에도 권고하는 결의안을 6월 28일 안보리에 상정하여 우여곡절 끝에 가결시켰다.

이 '6·28 유엔 결의'의 핵심은 유엔회원국이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필요한 군사원조를 한국에 지원하도록 요청한 데 있는 것이었다. 이 결의는 '6·26 유엔 결의'와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이 창설된 다음 국제평화 파괴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여 평화를 회복하려는 최초의 집단안전보장 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공산침략에 대응하게 됨에 따라, 전쟁이 북한군(공산군) 대 국군 및 유엔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우선 미국은 6월 29~30일에 미 해·공군의 작전지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였고 그 후 지상군도 참전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영국이 파병을 제의해 온 데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파병을 제의해 오는 등 1951년 6월까지 사이에 총 16개국의 전투부대가 참전하였다.

또한 7월 7일에는 안보리에서 유엔군사령부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통합군사령부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이리하여 유엔군이 조직되고 초대 유엔군사령관에 미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원수가 임명되어 유엔의 권능을 대행하게 되었고 1950년 7월 24일 정식으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여러 회원국의 지원은 병력의 규모 면에서보다 유엔군이라는 명분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유엔헌장의 정신에 따라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세계가 공산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유엔군의 기치 아래 결속되었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책적인 조치로서 7월 14일부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하게 되고, 이후 3년여의 한국전쟁은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수행되었다.

유엔참전 16개국의 인적피해는 총 54만여 명으로 국가별 피해 종합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별 피해 종합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총 계		545,908	57,933	481,155	1,047	5,773
1	오스트레일리아	1,583	339	1,216	-	28
2	벨기에	441	104	336	-	1
3	룩셈부르크	17	2	15	-	-
4	캐나다	1,557	312	1,212	32	1
5	콜롬비아	809	143	567	69	30
6	에티오피아	657	121	536	-	-
7	프랑스	1,289	262	1,008	7	12
8	그리스	647	188	459	-	-
9	네덜란드	585	119	463	3	-
10	뉴질랜드	103	23	79	1	-
11	필리핀	468	112	299	16	41
12	남아프리카공화국	42	34	-	-	8
13	타이	1,273	129	1,139	5	-
14	터키	3,623	721	2,493	175	234
15	영국	4,731	1,078	2,674	-	979
16	미국	528,083	54,246	468,659	739	4,439

* 전사/사망에는 부상, 실종, 포로 중 사망 포함

그리고 실종 및 포로에 대한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포로의 합계보다 귀환포로가 많은 경우에는 초과인원을 실종자 중에서 귀환으로 처리하였다.

○ 실종 및 포로 세부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실 종				포 로				
		소 계	사 망	귀 환	계 속	소 계	사 망	귀 환	미확인	거 부
총 계	14,731	6,174	5,127	761	286	8,557	2,784	5,742	9	22
호 주	29	-	-	-	-	29	1	21	7	-
벨기에	1	-	-	-	-	1	-	1	-	-
캐나다	33	32	-	32	-	1	-	1	-	-
콜롬비아	99	69	-	-	69	30	-	28	2	-
프랑스	19	7	-	-	7	12	-	12	-	-
네덜란드	4	3	-	3	-	1	1	-	-	-
뉴질랜드	1	1	-	1	-	-	-	-	-	-
필리핀	57	16	-	-	16	41	-	41	-	-
남아공	8	-	-	-	-	8	-	8	-	-
타이	5	5	-	-	5	-	-	-	-	-
터키	409	175	-	10	165	234	-	234	-	-
영국	1,060	-	-	-	-	1,060	81	978	-	1
미국	13,006	5,866	5,127	715	24	7,140	2,701	4,418	-	21

第 2 節 國家別 被害

1. 오스트레일리아

가. 개 요

이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신속히 참전하였으며, 육·해·공군을 모두 참전시킨 국가 중의 하나이다.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측의 대한군사원조에 대한 제의가 절대다수로 가결되자 즉각 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이 나라는, 6월 30일 당시 영연방 극동해군사령부에 파견되어 홍콩(Hong Kong)에 정박중이던 2척의 구축함을 파한한 데 이어, 7월 1일에는 공군 1개 비행대대를 또한 한국으로 파견하였다.

이리하여 6월 30일 구축함 2척은 미 극동해군과 합류하기 위하여 홍콩을 출항하여 오키나와(Okinawa) 기지를 향해 항진을 개시하고, 당시 일본(日本)에 영연방 점령군의 일부로서 주둔하고 있던 1개 비행대대(제77전투비행대대)가 7월 1일 미 극동공군에 배속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지상군의 참전도 결정되어, 당시 일본에서 훈련중이던 1개 보병대대의 선발대가 9월 17일에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이 나라는 명실공히 육·해·공군이 모두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육군이 2개 보병대대, 해군이 항공모함 1척 등 함정 9척, 공군이 1개 전투비행대대 및 1개 수송기편대를 참전시켰으며, 연

인원 17,000여 명이 투입되었다.

나. 인적 피해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ume II, Robert O'Neill, The Australia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1985, p. 710)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총 계		1,584	1,526	11	47
사망	합 계	339	293	5	41
	전 사 (부상후 사망 포함)	306	276	2	*a 28
	포로 역류중 사망	1	1	-	-
	사 고, 기 타	32	16	3	*b 13
부 상		1,216	*c 1,210	6	*d -
포 로		*e 29	23	-	6

* a : 공중전 당시의 피해임

b : 비행중 사고피해(9명), 지상사고피해(3명) 및 병사(1명)임

c : 2회 부상자(36명) 포함

d : 입수된 정보 없음

e : 휴전후 귀환포로(21명)와 역류중 사망자(육군 : 1명) 포함

다. 물적 피해

(1) 항공기 : 총 52대

(Mustangs : 15대, Meteors : 37대)

2. 벨기에/룩셈부르크

가. 개 요

1944년에 베네룩스(Benelux :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동맹을 맺은 세습입헌군주국(世襲立憲君主國)인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일찍이 영세중립국(永世中立國)임을 선언하고 100여 년 간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고 지내왔으나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침공으로 국토가 유린당하자 1949년에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맹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이 나라들의 국방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의지하고 있었고 군비 면에서는 아직도 군이 창설단계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한국에 파병할 상비군이 없었다.

7월 14일에 유엔과 나토(NATO)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재차 참전하도록 종용을 받은 양국은 동월 22일에 지원병을 모집하여 통합된 대대를 편성하여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유엔에 통보하는 한편 파병에 따르는 모병과 분견대 창설에 따르는 제반준비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벨기에는 1개 보병대대를, 룩셈부르크는 1개 보병소대를 벨기에 대대에 통합시켜 파한하여 두 나라 모두가 참전국의

일원이 되었으며, 참전병력은 벨기에가 연인원 3,600여 명, 룩셈부르크는 연인원 85명이었다.

나. 인적 피해

(한국전쟁피해 관련자료, 주벨무첩 제95-0134호, 1995. 7. 6)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458	106	351	-	1
벨 기 에	육 군	441	104	336	-	1
룩셈부르크	육 군	17	2	15	-	-

* ① 벨기에의 전사에는 한국인(KATUSA) 9명 포함

② 벨기에의 포로는 포로송환시 귀환함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3. 캐 나 다

가. 개 요

인접한 미국과 유엔이 북한군의 침략을 응징하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민감하였고, 또한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선 국가이다. 1950년 6월 30일, 때마침 개최중이던 하원의회는 파병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집단안보의 효율

성을 과시하기 위한 어떠한 정부의 조치도 이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한국파병을 절대지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제일 먼저 해군을 파병하는데 이어서 공군과 육군을 차례로 파병하였다. 그 규모는 육군의 1개 보병여단(연인원 22,000여 명), 해군의 구축함 3척 그리고 공군의 1개 수송기대대이었다.

나. 인적 피해

(유엔군의 한국전쟁사 영문판 제6권, 국방부, 1977, p. 139/151/152)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1,557	312	1,212	32	1
육 군	합 계	1,543	309	1,202	32	-
	장 교	72	11	59	2	-
	사 병	1,471	298	1,143	30	-
해 군		13	3	10	-	-
공 군		1	-	-	-	1

* 실종자 및 포로는 전원 송환됨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4. 콜롬비아

가. 개 요

남미의 유엔회원국들 중에서 유일한 참전국인 이 나라가 파병 결정을 보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보여준 유엔의 결의에 대한 절대지지와 미국의 큰 협조 내지 영향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지표명은 콜롬비아가 19세기 초엽에 스페인의 통치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한 이래 줄곧 가톨릭(Catholic) 교리를 바탕으로 자유와 세계평화를 부르짖어 왔으며, 또한 유엔의 창설 회원국이 된 이후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유엔헌장에 충실한 나라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정식으로 파병요청을 받은 정부는 우선 제1차로 프리깃함 1척을 유엔해군작전에 참여키로 결정하였다.

곧이어 육군부대의 파한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이에선 병력의 차출을 포함한 어려운 문제가 많아 시일을 끌게 되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파견되는 부대의 수송, 훈련, 무기, 식량 등에 관한 모든 것을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게 되자 마침내 육군도 한국에 파병하게 되었으며, 그 규모는 육군의 1개 보병대대와 해군의 프리깃함 1척이며, 연인원은 육군이 4,300여 명이고 해군이 300여 명이었다.

나. 인적 피해

(한국전쟁 피해관련자료 보고, 주콜무첩 제95-0239호, 1995.

6. 15)

단위 : 명

구 분	계	사 망	실 종	포 로	부 상
총 계	809	143	69	30	567
전 투 손 실	678	131	69	30	448
비 전투손실	131	12	-	-	119

* ① 포로귀환 : 28명

② 해군은 피해자료 없음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5. 에티오피아

가. 개 요

이 나라는 16개 유엔참전국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 부대를 파견한 유일한 나라로서 북한군이 남침하자 이를 무력으로 응징하기 위한 유엔의 모든 결의를 즉각 지지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조치는 에티오피아가 1935년 10월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Mussolini)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당시의 이른바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호소하여 즉각 침략자를 응징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시련을 겪은 바가 있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유엔을 창설할 기운이 태동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고 1945년에는 유엔창설회원국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유엔의 요청을 받아, 유엔현장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집단안전보장체제를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하던 이 나라는 서슴지 않고 군대를 파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온 국민이 이를 열렬하게 지지하였다.

이리하여 정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미국대사를 통하여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참전할 부대의 규모, 장비 및 수송수단 등을 협의하고 1,200명 수준의 1개 보병대대를 참전시키되 1년 간의 복무를 기간으로 새로운 대대와 교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황실근위대가 그 편성책임을 맡아 1950년 8월에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익년 4월에 드디어 미군 수송선으로 육군 1개 보병대대를 파병하였으며, 연인원은 3,500여 명이었다.

나. 인적 피해

(유엔군의 한국전쟁사 영문판 제6권, 국방부, 1977, p. 190)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657	121	536	-	-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6. 프 랑 스

가. 개 요

프랑스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한국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국에 자유, 평화 그리고 안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온 국가 중의 하나이며,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를 한반도 내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함에 있어서도 일관성 있는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군의 남침소식을 접하게 되자 한반도의 평화회복을 위한 회원국의 공동노력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당시의 국내사정은 불령인도지나(월남)에서의 전쟁이 나날이 격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하여 도발된 사태의 심각성과 집단안보체제 확립의 긴요성을 감안, 유엔의 요청에 즉각 호응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파병 결정에 따라, 프랑스는 제1차로 해군의 극동함대에서 소형 구축함을 유엔군사령부 예하에서 작전중인 미 해군함대에 파견하여 한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리하여 먼저 해군을, 이어서 육군도 파병하였는데 그 규모는 육군이 1개 보병대대 연인원 3,400여 명이고 해군이 구축함 1척이었다.

나. 인적 피해

(유엔군의 한국전쟁사 영문판 제6권, 국방부, 1977, p. 196)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1,289	262	1,008	7	12

* 포로는 전원 송환됨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7. 그 리 스

가. 개 요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의 3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한 관계로 빈번히 외침의 목표가 되어 민족적 수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그 결과 자국은 물론 세계문명의 발전과 성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근세에 와서도 제2차세계대전시 독일, 이태리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인적이나 물적으로 참담한 피해를 입은 바 있고, 침략군이 패망하자마자 소련의 책략과 지원에 의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전 이 확대되어 1944년에서 1949년까지 사이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져, 고립무원의 역경에 처했을 때 미국의 무기 및 탄약 등 지원으로 마침내 공산반란군을 격멸하였다.

이 나라는 유엔창설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 유지에

참여하였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서는 항시 유엔의 친한적 노력을 지지하고, 1949년 8월에는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하는 등 양국간의 우호관계는 밀접하였다.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남침을 무력으로 응징하고 대한민국을 지원할 일련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에 이를 통고하자 이나라는 그 동안 공산침략자들의 온갖 흉계와 만행을 뼈아프게 체험한 국가답게 서슴지 않고 파병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정부는 우선 공군에 이어서 육군도 파병하였으며, 그 참전규모는 육군이 2개 보병대대 연인원 10,000여 명과 공군이 1개 수송기편대 연인원 200여 명이였다.

나. 인적 피해

(주재국 한국전 참전자료 관련, 주희무첩 제95-313호, 1995. 11. 28)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총 계	647	188	459
육 군	635	176	459
공 군	12	12	-

다. 물적 피해

- (1) 육군 : 기록 없음
- (2) 공군 : C-47 수송기 4대 파괴

8. 네덜란드

가. 개 요

이 나라는 한국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군사력은 미약하였으며, 그나마 약간 있는 병력마저 인도네시아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들은 1951년 5월에야 본국으로 철수할 예정이었다.

그리하여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호응하여 참전에 동의하였으나 형편상 지상군의 파견이 당분간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우선 해군의 구축함 1척을 급파하였고, 그 이후 한반도의 사태가 날로 악화되자 추가로 육군의 1개 보병대대를 파병하였으며 연인원은 육군이 4,000여 명이고 해군은 1,400여 명이었다.

나. 인적 피해

(한국전쟁 피해관련자료, 주벨무첩 제95-76호, 1995. 7. 13)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586	119	463	3	1
육 군	584	117	*a 463	*b 3	*c 1
해 군	2	*d 2	-	-	-

* a : 전상(381명), 훈련중 부상(26명), 사고로 부상(56명), 이 가운데 3명 사망

b : 포로송환시 전원(3명) 귀환

c : 포로수용소에서 사망(1명)

d : 전사(1명)와 사고사(1명)

* 육군을 증원하던 한국의 KATUSA 20명과 노무자 20명(계 : 40명)의 전사는 제외됨

다. 물적 피해(근거 : 상동)

- (1) 1951년 2월의 황성전투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음
- (2) 후방작전을 자주 수행하여, 장비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우군부대가 남겨 놓은 것으로써 대치(보충)하는 데 충분하였음
- (3) 더 이상의 특기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음

9. 뉴질랜드

가. 개 요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는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체제를 갖추고 1951년에는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와 태평양공동방위체(ANZUS)를 체결하였으며, 1954년에는 동남아 방위조약기구(SEATO)에 가입하는 등 태평양 및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뉴질랜드가 북한의 남침에 대하여 큰 충격을 받고 유엔 우방국들이 취한 대북한 응징책을 지지한 것은 당연하였으며, 해군의 프리깃함 2척을 긴급 파견한 이 나라는 전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추가로 육군의 1개 포병대대를 파병하였고, 연인원은 육군이 4,000여 명이고 해군이 1,400여 명이었다.

나. 인적 피해

(한국전쟁사 제11권, 전편위, 1980, p. 66)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증	포 로
총 계	103	23	79	1	-
육 군	102	22	79	1	-
해 군	1	1	-	-	-

* 실증자(1명)는 포로송환시 귀환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10. 필 리 핀

가. 개 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독립한 지 불과 4년밖에 안 된데다가 후크(Huks)단의 반란으로 국내정정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유엔의 참전요청을 받아들인 필리핀은 대후크단전에 투입된 총 10개 대대 가운데 1개 대대를 차출하여 파견함으로써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한 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반공노선을 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서 후크단의 반란과 종교의 두가지 지배적인 요인을 들 수 있겠

다. 산업구조는 인구의 70%가 종사하는 농업이 제1산업이고 그 다음이 임업, 어업 그리고 광공업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 농업의 소작제도가 이른바 후크단 반란의 원인이었다.

1942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소작농폐지(Hukbalahap)운동이 후크단으로 조직되면서 테러화하였고 독립 후에는 공산주의로 변모하여 극렬한 반정부테러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후크단에 대한 토벌작전이 8년이나 지속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들의 파괴적인 테러에 시달림을 받은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의 하나로서 오랜 세월에 걸친 스페인과 미국에 의한 통치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 신앙에 있어서 가톨릭화와 이슬람(Islam)화가 이 나라를 종교 이념상 철저한 반공국가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파견된 병력규모는 육군의 1개 보병대대 연인원 7,400여 명에 달하였다.

나. 인적 피해

(한국전쟁 피해관련자료, 주비무첩 제95-217호, 1995. 6. 23)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468	112	299	16	41

* 포로(41명)는 포로송환시 귀환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11. 남아프리카공화국

가. 개 요

유엔참전국 가운데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전국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낯설은 나라가 바로 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하고 국가산업을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군수품 생산에 주력하는 한편, 연인원 32만여 명을 동원하여 에티오피아, 지중해 등에서 추축국 격멸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종전 후에는 자유세계의 결속에 적극 참여하여 1945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조인된 유엔헌장의 서문을 초안한 나라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하더라도 즉각 동원할 수 있는 백인(白人)만으로 편성된 125,000명 규모의 병력을 상비하고 있었다.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의 대한군사지원에 관한 결의안이 가결되자, 이 나라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지상군의 파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결국 그 대안으로 공군의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그 참전규모는 공군의 1개 전투비행대대로서 연인원이 830여 명에 이르렀다.

나. 인적 피해

(한국전쟁사 제11권, 전편위, 1980, p. 219)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42	34	-	-	8

* 포로(8명)는 포로송환시 귀환

다. 물적 피해

(1) 항공기 총손실 : 78대

○ F-51 MUSTANG : 74대

○ F-86 SABRE : 4대

12. 타 이

가. 개 요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시 한때 일본군에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종전후 독립국가로서 기반을 굳혀 가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타이는 최초로 주산물인 미곡으로 한국에 식량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유엔의 결의를 지지할 뜻을 가졌었다. 그러나 유엔사무총장의 군사지원 호소에 계획을 변경하여 지상군 전투부대의 파한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해군과 공군병력까지도 참전시켜 유엔의 평화유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리하여 그 참전규모는 육군 1개 보병대대 연인원 3,700여 명,

해군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 연인원 2,500여 명 그리고 공군 1개 수송기편대 연인원 조종사 45명 외 승무원 등이었다.

나. 인적 피해

(유엔군의 한국전쟁사 영문판 제6권, 국방부, 1977, p.353)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총 계	1,273	129	1,139	5	-
육 군	1,269	125	1,139	5	-
해 군	4	4	-	-	-

* 전사 및 전상에 비전투손실 포함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13. 터 키

가. 개 요

이 나라는 18세기에 이르러 대오토만(Ottoman)제국을 창건하고 이때부터 소련의 팽창주의와 대결해 왔다.

근대에 이르러 중동 및 발칸반도가 세계열강의 세력 각축장이 되자, 터키는 한때 중립을 표방하기도 하였으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2월의 대독선전포고를 계기로 연합국측에 가담한 뒤로는 완전히 친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반공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1952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맹하는 등 소련침략을 저지하여 온 자유진영의 철저한 반공국가이다.

7월 중순에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지상군의 파병을 요청받은 터키정부는 단시일내에 4,500명 규모의 파병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유엔에 통보하여 유엔회원국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리하여 터키는 1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로써 전투부대를 편성하고 여기에 공병, 수송, 병기 및 통신부대 등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전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단으로 편성하여 파한하였으며, 연인원이 15,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인적 피해

(한국전쟁사 제11권, 전편위, 1980, p. 387)

단위 : 명

구 분		계	전 사	전 상	실 종	포 로
육 군	총 계	3,623	721	2,493	175	234
	장 교	157	37	111	3	6
	하 사 관	138	26	108	1	3
	병	3,328	658	2,274	171	225

* ① 전상에는 일반환자 346명(장교 : 30명, 하사관 : 42, 병 : 274) 포함

② 포로귀환 : 244명

다. 물적 피해 : 자료 없음

14. 영 국

가. 개 요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7월에 주요 전승국들과 같이 세계평화 수립의 일환으로 한국의 독립보장을 선언하였고, 종전 후에는 공산세력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한 나토(NATO)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반공·반독재 국가이다.

따라서 영국은 북한의 남침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 즉각 미국에 동조하여 그의 신속한 대북한 응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신속하고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파견하는 동시에 영 연방계열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위시한 여러 우방국들에게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집단안보를 표방하는 유엔군을 창설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리하여 영국군의 참전은 홍콩(Hong Kong)에 기지를 둔 극동함대의 출동명령으로 시작되었는데, 6월 29일에는 8척(항공모함 1, 순양함 2, 구축함 2, 프리깃함 3)의 함정들이 한반도의 서해안으로 항진하여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이때 영국 해군의 전력은 하루 앞서 이미 작전을 개시한 미 해군의 전력과 비슷한 규모로 개전 초기의 북한 해군의 해상활동을 봉쇄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격적으로 극동해군을 작전지역으로 출동시킬 수 있었던 영국도 지상군의 파견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아 선뜻 결정을 못 내리다가 7월 26일 마침내 1개 보병여단(후에 2개

보병여단 규모)의 과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또한 육군과 해군 외에도 특수목적을 위해 훈련된 1개 대대규모의 해병특공대를 미 해군에 배속함으로써 북한군의 병참선 및 해안선을 기습공격케 하여 개전 초부터 북한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참전규모는 육군의 2개 보병여단 연인원 40,000여 명, 해군의 항공모함 1척을 포함한 함정 17척 연인원 22,000여 명에 이르렀다.(해병특공대 및 공군의 조종사 약간 명 포함)

나. 인적피해

(OFFICIAL HISTOR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ume II, Anthony Farrar-Hockey, LONDON : HMSO, 1995, p. 486/491)

(1) 피해 종합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사/사망	부 상	포 로
총 계	4,731	1,078	2,674	979
육 군	4,521	977	2,589	955
해 군	67	44	19	4
해 병	115	30	66	19
공 군	28	27	-	1

* 포로는 81명의 사망자를 제외하였음

(2) 포로를 제외한 피해현황

구 분		계	전사/사망	부 상
총 계	합 계	3,752	1,078	2,674
	장 교	331	138	193
	사 병	3,421	940	2,481
육 군	합 계	3,566	977	2,589
	장 교	283	98	185
	사 병	3,283	879	2,404
해 군	합 계	63	44	19
	장 교	31	26	5
	사 병	32	18	14
해 병	합 계	96	30	66
	장 교	5	2	3
	사 병	91	28	63
공 군	합 계	27	27	-
	장 교	12	12	-
	사 병	15	15	-

* ① 전사/사망에는 실종중 전사나 포로가 되어 사망한 자, 그리고 부상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였음

② 해군의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는 중국인 1명이 포함됨

(3) 포로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해 병	공 군	비 고
총 계	1,060	1,026	4	29	1	
송 환 포 로	978	955	4	18	1	
포 로 중 사 망	71	62	-	*a 9	-	확 인
포 로 중 사 망	10	9	-	1	-	추 정
송 환 거부 포 로	1	-	-	1	-	

* ① “a” : 해병을 지원하는 해군 포함(예 : 의무지원 요원)

② 포로 중 사망(확인)은 송환된 포로에 의해 확인됨

③ 포로 중 사망(추정)은 포로될 때 생존이 확인되었으나, 그 이후 공산군측이 발표하지 않았거나 다른 유엔군 포로들 중 아무도 모르는 경우임

다. 물적 피해

(한국전쟁 피해관련자료 수집보고, 주영무첩 제95-103호,
1995. 9. 27)

(1) 육군 : 자료 없음

(2) 해군 : 함정은 13번의 손상을 입었음

(3) 공군 : 항공기 2대

15. 미 국

가. 개 요

북한이 남침을 자행하자 미국은 지체없이 유엔군의 참전을 선도하고 그 작전을 주도하였으며, 참전규모는 육군의 7개 보병사단과 1개 기병사단 그리고 2개 연대전투단 연인원 283만여 명, 해군(해병 포함)의 극동해군 제7함대 1개 해병사단 연인원 160만여 명 그리고 공군의 극동공군 연인원 42만여 명 등이었다.

나. 인적 피해

(1) 총 손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총 계	528,083	54,246	468,659	739	4,439
육 군	484,762	37,133	442,971	664	3,994
해 군	6,130	4,501	1,576	22	31
공 군	7,725	7,084	368	53	220
해 병	29,466	5,528	23,744	-	194

* ① 전사/사망에는 실종 및 포로기간 중 사망자와 부상기간 중 사망자 포함(총 실종/포로는 전투손실 현황 참조)

② 실종자는 715명 귀환

③ 포로는 4,418명 귀환

(2) 전투손실 현황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James P. Finley,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p. 89)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해 병
총 계		142,091	109,958	2,087	1,841	28,205
사 망 (계)		33,629	27,704	458	1,200	4,267
전 사		23,300	19,334	279	379	3,308
부 상	소 계	105,785	79,526	1,599	379	24,281
	사 망	2,501	1,930	23	11	537
	기 타	103,284	77,596	1,576	368	23,744
실 종	소 계	5,866	4,442	174	859	391
	사 망	5,127	3,778	152	806	391
	귀 환	715	664	13	38	-
	계 속	24	-	9	15	-
포 로	소 계	7,140	6,656	35	224	225
	사 망	2,701	2,662	4	4	31
	귀 환	4,418	3,973	31	220	194
	거 부	21	21	-	-	-

* 사망(계)는 전사, 부상중 사망, 실종중 사망, 포로중 사망의 합계임

(3) 육군 피해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전 투 손 실	비전투손실
계	484,762	109,958	374,804
사 망	37,133	27,704	9,429
부 상	442,971	77,596	365,375
실 중 (귀 환)	664	664	-
포 로 (귀 환)	3,973	3,973	-
포로(귀환거부)	21	21	-

* 전투손실(사망)에는 실중, 포로, 부상중 사망 포함

(4) 해군 피해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전 투 손 실	비전투손실
계	6,130	2,087	4,043
사 망	4,501	458	4,043
부 상	1,576	1,576	-
실 중 (귀 환)	13	13	-
포 로 (귀 환)	31	31	-
실 중 (계 속)	9	9	-

* 전투손실(사망)에는 실중, 포로, 부상중 사망 포함

(5) 공군 피해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전 투 손 실	비전투손실
계	7,725	1,841	5,884
사 망	7,084	1,200	5,884
부 상	368	368	-
실 중 (귀 환)	38	38	-
포 로 (귀 환)	220	220	-
실 중 (계 속)	15	15	-

* 전투손실(사망)에는 실종, 포로, 부상중 사망 포함

(6) 해병 피해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전 투 손 실	비전투손실
계	29,466	28,205	1,261
사 망	5,528	4,267	1,261
부 상	23,744	23,744	-
실 중 (귀 환)	-	-	-
포 로 (귀 환)	194	194	-
실 중 (계 속)	-	-	-

* 전투손실(사망)에는 실종, 포로, 부상중 사망 포함

다. 물적 피해

(1) 전차 피해

단위 : 대

구 분	계	경 전 차	중 전 차	기 타
총 계	777	65	675	37
적에 의한 파괴	301	33	260	8
적과 무관한 파괴	181	13	155	13
수리 불가	251	16	225	10
유 기	44	3	35	6

* 기타란은 105mm 곡사포(4)와 M-32 전차구난차(33)임

(2) 항공기 피해

단위 : 대

구 분		수 량(기)	비 율(%)
총 계		1,838	100
적에 의 함	합 계	944	51
	항 공 기	140	(7)
	지 상 화 기	736	(40)
	미 상	68	(4)
적 과 무 관 함		894	49

* 해군기는 제외됨

(3) 함정 피해 : 5척 침몰

附 錄

1. 共 產 國 家 의 被 害
2. 關 係 資 料 目 錄

1. 共產國家의 被害

가. 개 요

한국전쟁을 도발한 북한군이나 이를 지원한 중공군 그리고 소련군(현 러시아군)이 구체적인 피해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확한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자국의 피해규모는 축소하고, 전과는 과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향이라고 본다면 해당 국가의 공식자료가 아닌 내용이나 미군의 자료(추정) 등은 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쌍방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범위 내에서 그 일부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참고자료로서 제시하였다.

나. 북한군의 피해

북한군은 개전 이후 계속 남진하여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하였으나 이 곳에서 전선이 교착되면서 수차에 걸친 총공격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고, 유엔군의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공중폭격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이후의 지리멸렬한 패퇴 등을 감안할 때 그 피해는 인적, 물적 손실이 엄청난 규모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측이 공식발표한 자료가 없으므로 유엔군측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1) 인적 피해현황

단위 : 명

출 처 문 헌	총 계	사 망	실 종 / 포 로	비 전 투 손 실	비 고
한 국 전 란 4 년 지	607,396	508,797	98,599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640,000	520,000	120,000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801,000	522,000	102,000	177,000	사망에 부상 포함

(2) 물적 피해현황

개전초기에 투입되었던 항공기(211대)와 전차(242대) 등은 전량 손실로 볼 수 있으며, 전체 현황은 중공군의 물적 피해현황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중공군의 피해

(中國向朝鮮派兵230萬大軍(中國在朝鮮兵力及傷亡內情), 廣角鏡月刊, 1993. 4, 廣角鏡出版社有限公司, 香港, pp. 48~52)

1950년 10월 16일 최초로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진입한 중공군은 계속하여 동년 10월 말까지 제1차부대 6개 군(18개 사단) 30만 명이 모두 입북하여, 한국군 및 유엔군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였다(정식출병은 10월 19일, 정식참전은 10월 25일임). 한반도 내의 중공군은 휴전협상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1951년 6월에는 95만 명으로, 최대로 증강되었을 때(1953년 3월)는 135만 명까지

증강되었으며, 휴전 당시(1953년 7월 27일)의 총병력은 130만 명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들 작전부대는 대부분이 교체부대로서 입북하여 전쟁을 수행하였으며, 연인원은 230만 명에 이르고 후방근무 담당 민간인 60만 명을 포함하면 총 300만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것이다.

(1) 인적 피해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 투 손 실	비 전 투 손 실
총 계	972,600	369,600	603,000
사 망	148,600	135,600	13,000
부 상	798,400	208,400	590,000
실 종	3,900	3,900	-
포 로	21,700	21,700	-

* (1) 부상(비전투손실)에는 질병에 의한 입원치료자(44.7만 명)를 포함

(2) 미군의 자료(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James P. Finley, 1983, p. 88)에 의하면, 총 피해 123만여 명으로 26만여 명의 차이가 있음

(2) 물적 피해현황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James P. Finley, 1983, p. 90/96)

단위 : 대

구 분		계	파 괴	파괴(추정)	손 상
항 공 기	총 계	2,186	971	200	1,015
	공 중 전	2,072	918	175	979
	공 중 폭 격	114	53	25	36
전 차		1,178	1,178	-	-

* 북한군과 중공군의 구분이 없음

라. 소련군(현 러시아군)의 피해

(‘북한의 하늘에서’ 시리즈, 월간지 “항공과 우주비행”,
1990. 10~91. 5)

한국전쟁을 실질적으로 배후 조종 및 승인한 소련은 북한의 남침 공격 작전계획의 수립에 깊이 개입하였으며, 전쟁 전에는 주로 전쟁 물자를 지원하다가 중공군이 개입한 직후인 1950년 11월부터는 항공부대를 파견하여 전쟁 말까지 북한군 및 중공군을 지원하였다.

북한에 파견된 항공부대인 Z전투항공대는 제2차세계대전시 독일군과의 실전 경험이 있는 조종사들로 주로 편성하였으며, 주력 기종은 Z전투기인 MIG-15로써 장비하였다.

주로 북한 상공에서 공중전을 수행한 이들은 한국전쟁 참전 기간 동안에 조종사 1명 만이 탈출중 부상하고 저항중에 자살하였으나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무사히 탈출하였으며, 항공기의 손실은 345대 정도였다.

2. 關係資料目錄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란지(1~4), 1951~5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0권, 197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1권, 1980.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휴전사, 1989.
- 국방부 인사국, 6·25 당시 실종자 송환촉구 대책회의 자료, 1994.
- 국방부 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1986.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인사편), 1956.
- 육군본부, 6·25사변 중 환자통계연보, 1968.
- 육군본부, 6·25사변 후방전사(군수편), 1955.
- 육군본부, 한국전쟁 피해통계 자료수집 보고, 1995.
- 해군본부, 해군사(작전편), 1958.
- 해군본부, 해군사(행정편), 1958.
- 해군본부, 한국전쟁 피해자료 보고, 1995.
- 해군본부, 작전경과보고서 1~11권.
- 공군본부, 항공기 사고통람, 1973.
-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91.
- 공군본부, 한국전쟁 피해통계 자료제출, 1996.
-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3/1955/1957.
-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 제2집, 1973.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 1995.

경찰청, 한국전쟁피해 통계자료 검토결과 통보, 1995.

건설교통부, 한국전쟁피해 통계자료 검토회신, 1995.

교육부, 한국전쟁피해 통계자료 검토의견 제출, 1995.

국가보훈처, 한국전쟁 피해자료 수집통보, 1995.

법무부, 한국전쟁중 교도관 인명피해현황 통보, 1995.

보건복지부, 한국전쟁피해 통계자료 검토통보, 1995.

정보통신부, 한국전쟁기간 중 체신사업의 피해통계자료 회신, 1995.

현충원, 국립묘지 안장현황, 1995.

주호무첩 제95-23호(한국전쟁 피해자료, 1995. 6. 5)

주벨무첩 제95-0134호(한국전쟁피해 관련자료, 1995. 7. 6)

주벨무첩 제95-76호(한국전쟁피해 관련자료, 1995. 7. 13)

주콜무첩 제95-0239호(한국전쟁피해 관련자료 보고, 1995. 6. 15)

주희무첩 제95-313호(주재국 한국전 참전자료 관련, 1995. 11. 28)

주비무첩 제95-217호(한국전쟁피해 관련자료, 1995. 6. 23)

주영무첩 제95-103호(한국전쟁피해 관련자료 수집보고, 1995. 9. 27)

Walter G. Hermes, *TRUCE TENT AND FIGHTING FRONT*,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WASHINGTON. D.C.. 1966.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EPUBLIC OF KOREA,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THE KOREAN WAR* VOLUME VI, 1977.

Robert O'Neil, *AUSTRALIA IN THE KOREAN WAR 1950~53* VOLUME II, The Australia War Memorial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Canberra, 1985.

Anthony Farrar-Hockley, *OFFICIAL HISTORY The British Part in the KOREAN WAR* VOLUME II, LONDON : HMSO, 1995.

James P. Finley, *The US Military Experience In Korea 1871~1982*, Command Historian's Office, Secretary Joint Staff, Hqs, USFK/EUSA, 1983.

月刊廣角鏡, 中國向朝鮮派兵230萬大軍(中國在朝鮮兵力及傷亡內情), 廣角鏡出版社 有限公司, 香港, 1993.

월간 우주비행, '북한의 하늘에서' 시리즈, 러시아, 1990. 10~91. 5.

에드완 베르고, 6·25전란의 프랑스대대(번역판), 동아일보사, 1983.

□ 執筆

責任研究員 金 元 權

韓國戰爭被害統計集

1996年 12月 20日 印刷

1996年 12月 28日 發行

發行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1街 8番地
國 防 軍 史 研 究 所

發行人

嚴 變 駟

印刷處

서울特別市 龍山區 龍山洞 2街 12番地
軍人共濟會 第1文化事業所

〈정간위 심의필 96-11-6-58〉

〈非賣品〉